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0. 8. 26.(수), 14:00 ~ 16:30

▣ 장 소 : 천연기념물센터

▣ 출석의원 : 백인성, 기근도, 박종민, 이유미, 정부희, 백운기, 김대관, 최종희, 신정일, 이정모, 정명섭

(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공개)
2	「성락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해제	(공개)
3	「서울 성북동 별서」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공개)
4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윗세오름대피소 증축	(공개)
5	「부산 오륙도」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스카이워크)	(공개)
6	「속리산 법주사 일원」 내 자연학습장 건립	(공개)
7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8	「포항 북송리 북천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9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한라산천연보호구역 등 2건)	(공개)
10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및 「제주 상효동 한란자생지」 주변 돈내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공개)
11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검토사항】		
12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공개)
13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검토	(공개)
【보고사항】		
14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52건)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천기 2020-07-01

1.「신안 가거도 섬등반도」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을 국가지정문화재(명승)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추진경과

- '16년 유형별 전국 명승자원조사(일출·낙조)(문화재청)
- '20.04.27.~'20.04.29 명승 지정 현지조사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소장)
- '20.06.24. 제5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지정 검토(가결)
- '20.07.14.~'20.08.12. 지정예고(관보공고)
  · 제출의견 : 없음

다. 주요내용

(1) 지정내용 : 명승

○ 지정명칭 :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 한문 : 新安 可居島 섬등半島
- 영문 : Seomdeungbando Peninsula in Gageodo Island, Shinan

○ 소 재 지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95 등

○ 지정사유

- 국토 최서남단이라는 지정학적 상징성와 더불어 통일신라시대부터의 무역 중간기항지로 활용된 역사성, 식생·지형 및 패총, 멸치잡이 노래 등 자연적·역사문화적 자원의 보존이 우수함.
- 기암절벽의 반도로서 병풍처럼 펼쳐진 해식애의 경관성이 우수하며, 특히 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의 집점으로서 장소성이 뛰어남.

○ 문화재지정구역 : 3필지 194,468㎡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95	임	243,335	185,446	신안군
	산 177	임	2,134	2,134	기획재정부
	산 178	임	6,888	6,888	산림청
계	3필지		252,357	194,468	

○ 관리단체 : 전라남도 신안군

라. 문화재 현황

○ 입지 및 지질현황

- 독실산(639m)를 중심으로 전체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섬으로, 20° 이상의 급경사면이 섬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음.
- 지형은 해식애, 해식동, 자갈해안, 해안 단구 등과 단층 또는 절리의 방향을 따라 해안선이 발달한 수려한 해안지형과 풍화지형, 화산지형, 구조지형 등이 분포함.
- 가거도에 분포하는 암석들의 암층서는 하부로부터 퇴적암류, 안산암질암, 데사이트질암, 유문암, 암맥류, 제4기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가운데 안산질암이 가장 넓게 분포함.

○ 식생구성과 특징

- 천연기념물인 흑비둘기(제215호), 뿔쇠오리(제450호) 및 흰날개해오라기, 바다직박구리, 황로, 찌르레기 등 희귀 조류가 서식함.
- 주변 해역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호구역내에는 무척추동물인 개적구, 굵은줄격판담치, 상어껍질별벌레, 좁쌀무늬총알고둥, 검은큰따개비와 해조류인 감태, 비늘산호말, 톳, 작은구슬산호알 등이 서식함.
- 난대림으로 후박나무 군락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굴거리나무, 구실잣밤나무, 붉가시나무, 황칠나무, 감탕나무 등의 상록활엽수림이 잘 보전되어 있으며 자생 침엽수로는 소나무가 유일함.
- 멸종위기식물인 박달목서(II급), 으름난초(II급)가 서식하고, 풍란(I급)등이 드물게 자라고 있음. 한국 특산식물인 흑산도비비추, 처진물봉선, 가야산은분취, 개족도리풀, 새끼노루귀 홍도원추리 등과 음양곽, 현삼, 목단피, 갈근 등의 다양한 식물이가 자생함.

○ 역사문화와 경관

- 가거도는 대한민국 최서남단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통일신라시대부터 중국과의 무역을 위한 중간 기항지로서 이용이 된 역사성을 지님. 역사

문화자원으로 천연기념물 제341호 「신안 구굴도 바닷새류(뿔쇠오리,바다제비,슴새) 번식지」와 전남기념물 제130호 가거도 패총, 전남무형문화재 제22호 「가거도 멸치잡이 노래」, 등록문화재 제380호 「신안 소흑산도 등대」 등이 있음.

- 섬등반도는 2구 마을 동쪽으로부터 뻗어 내린 기암절벽의 반도로서 병풍처럼 펼쳐진 해식애가 일대 장관을 이루고 있음. 광활한 바다와 조화된 장엄한 웅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며, 특히 낙조경관이 아름다움.
-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암봉이나 병풍처럼 펼쳐진 해식애 등 특유의 지형미를 보여주는 대상물이 일출과 낙조의 구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 해가 출몰하는 지점에는 시각적 초점으로 작용하는 V자 형이 나타남. 대체로 섬에서 해수로 돌출된 지형물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해수면을 전개시키는 경관구도로 요약되는데, 암봉과 해수의 극적인 대비는 보는 이로 하여금 흥미로운 시각적 체험을 가능케 함.

ㅇ 연혁·유래

-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가가도(可佳島)로, 『여지도서』에는 가가도(佳嘉島)로 표기되어 있으며 『해동지도』와 『제주삼현도』에는 가가도(家假島)로 표기되어 있음.
-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의 '가가도'로 불리다가 1986년부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의 가거도(可居島)라 불렸으며, 일제강점기 때 '소흑산도'로 지명이 바뀌었다가 다시 가거도로 불리고 있음.

마. 검토의견(******)

ㅇ 가거도는 국토의 최서남단이라는 지정학적 상징성과 더불어 통일신라시대부터 중국과의 무역을 위한 중간기항지로서 활용된 역사성을 지니며, 식생·지형 및 패총, 멸치잡이 노래 등 자연적·역사문화적 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음.

ㅇ 섬등반도는 빼어난 원생경관을 기반으로 병풍처럼 펼쳐진 해식애가 뛰어난 경관을 이루며, 특히 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의 집점으로서의 장소성을 가짐. 일몰경관에 있어 섬등반도는 점점 낮아지는 연봉을 이루는 산줄기와 해안의 기암절벽 해식애가 타 지역과는 차별되는 빼어난 지형경관을 연출함.

ㅇ 근거기준

- 명승 지정기준 제3호의가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 조망지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20.4.27.~4.29.)

<*** 문화재위원>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섬등반도 일원은 가거도 팔경의 하나로, 향리에 위치하며, 주요 역사문화환경으로는 가거도 패총, 가거도 멸치잡이 노래 등이 있음.

○ 연혁·유래 및 특징

- 가거도 북쪽 경사면 자락에 위치한 패총에서 신석기 시대 유물이 출토됨
-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가가도(可佳島), 『여지도서』에는 가가도(佳嘉島)로 표기되어 있으며, 『호구총서』에 30여호가 거주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해동지도』,와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에는 가가도(家假島)로 표기되어 있음.
-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의 '가가도(嘉佳島, 可佳島)'로 불리다가 1986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이라는 뜻의 가거도(可居圖)라 부르게 됨.
- 국토의 최서남단이라는 지정학적 특성과 한반도 지각운동을 알 수 있는 화산지형과 해수와 암봉, 해식애 등이 어울려 빼어난 해안경관을 형성하며,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는 상록활엽수 분포에 중요한 지리학적 위치에 있음.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가거도 팔경의 4경에 해당하며, 마을(향리) 동쪽으로부터 뻗어내린 기암절벽의 반도로서 병풍처럼 펼쳐진 해식애가 일대 장관을 이루며, 특히 광활한 바다와 조화된 장엄한 경관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며, 특히 낙조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명승으로서의 지정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 근거기준: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조망 지점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지정기준 3 가에 해당)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가거도 섬등반도 일원에 대한 총합적인 자원(지형, 지질, 식물, 경관, 역사적 사실 등)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함.

○ 문화재 가치

- 국토의 최서남단이라는 지정학적 특성과 한반도 지각운동을 알 수 있는 화산지형과 해수와 암봉, 해식애 등이 어울려 빼어난 원생경관을 기반으로, 병풍처럼 펼쳐진 해식애가 일대 장관을 이루며, 특히 낙조를 조망·체험·경험할 수 있는 경관의 집점으로서의 장소성을 가짐.

○ 경관

- 병풍처럼 펼쳐진 섬등반도의 지형이 파노라믹 경관을 이루며, 해식애 곳곳에서

나타나는 암벽 식생과 해안 바위절벽 등이 시각적 흥미를 가지게 함.

- 낙조 시 섬등반도는 해수면에 넓은 그림자를 드리우며, 붉은 색조와 어울려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냄

○ 원형 보존성

- 섬등반도 일원의 암봉 및 기암절벽 등의 경관요소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 차별성

- 섬등반도 일원은 해수와 암봉과 병풍처럼 펼쳐진 해식애 등이 어울려 빼어난 원생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장소로서, 특히 낙조가 웅장하고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타 명승과 차별됨.

○ 종합의견

- 가거도 섬등반도 일원은 국토의 최서남단이라는 지정학적 특성과 한반도 지각운동을 알 수 있는 화산지형과 해수와 암봉, 해식애 등이 어울려 빼어난 원생경관을 기반으로, 병풍처럼 펼쳐진 해식애가 일대 장관을 이루며, 특히 낙조 등을 조망·체험·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명승으로서의 지정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 지정구역의 경우 섬등반도 일원으로 경관조망점(예: 경도 125.099638, 위도 34073030 일원, 노을 전망대 일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섬등반도 일원을 제안하지만, 보존·정비 및 활용에 관한 정비계획의 경우는 가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위원>**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신안 가거도는 우리나라 최남서단에 위치한 섬이며, 가거도의 주요 문화재로는 신안 구굴도 바닷새류 번식지, 신안 소흑산도 등대, 신안 가거도 패총, 가거도 멸치잡이 노래 등이 있음

○ 연혁·유래 및 특징

-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가가도(可佳島)로, 『여지도서』에는 가가도(佳嘉島)로, 『해동지도』와 『제주삼현도』에는 가가도(家假島)로 표기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소흑산도'로 지명이 바뀌었다가, 다시 가거도로 불리고 있음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힘차게 뻗어나가는 형상의 섬등 반도와 남덕여 일대를 중경으로 하는 일몰경관은 매우 인상적이며, 가거도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장소로서 명승

지정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 명승지정 후 6개월 이내 수립예정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가거도에는 도로, 등산로, 전망대 등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정비보완하여 활용할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문화재 가치

- 가거도는 우리나라 최서남단의 섬이라는 영토성을 지닌 섬으로서, 3,000여개 우리나라 섬 중에서 해발고도가 꽤 높은 편에 속하는 산(독실산, 639m)이 존재하는 섬이다. 또한 가거도는 후박나무 군락, 구굴도 바다제비 서식지, 신석기시대 패총, 멸치잡이 노래, 등대 등 다양한 자연적·역사문화적 자원이 존재하는 섬임

○ 경관

- 가거도는 중북부 독실산(639m)을 중심으로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주능선이 길게 뻗어 해안까지 이르는 산지 비중이 높은 섬임. 가거도의 기반암은 대부분 안산암, 석영안산암, 유문암질석영안산암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안선 주변에 분포하는 사암과 규암은 수직절리가 잘 발달하여 급경사의 해식애가 장관을 이루고 있음. 급경사 절벽인 해식애 사이에는 해식동과 노치가 잘 발달해 있으며, 저파랑 에너지 지대인 북동부 일대에는 소규모의 자갈해안과 모래해안이 나타남. 습기 공급이 원활한 해양 환경의 영향으로 대부분 급경사를 이루는 섬 내부의 산지 사면에는 얇은 토양층이 고루 덮여 있어 후박나무와 동백나무 등 식생 군락이 잘 발달해 있음

○ 원형 보존성

- 경관이 우수한 섬등반도와 장군봉 등의 경관 요소는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차별성

- 우리나라 최서남단의 섬인 가거도 일몰 경관은 중경으로서 섬등반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일출 경관은 수평선 상에 멀리보이는 만재도와 몇 몇 무인도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음. 특히 일몰경관에 있어서 섬등반도는 점점 낮아지는 연봉을 이루는 산줄기가 바다 쪽으로 힘차게 뻗어 나가고 있는 모습과 해안의 기암절벽 해식애가 이루는 독특한 지형경관은 타 지역의 일몰과는 차별되는 빼어남을 지닌 경관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가거도가 지니는 중요한 상징성은 우리나라 최남단의 섬이라는 데 있음. 이러한 영토성을 지닌 가거도가 육지로부터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농후함. 하지만 가거도에는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다양한 자연 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섬에 비하여 도로, 전망대, 등산로, 등대 등 관광 인프라가 비교적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고 일몰과 일출 경관이 명승으로 지정된다면 충분한 발전·유지 잠재력을 지닌 섬으로 판단됨. 더불어 명승 지정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더욱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 해돋이 장소로는 두 곳이 있음. 하나는 장군봉 정상에서 납덕여 부근에서 보이는 일출을 조망하는 곳인데, 조사 당시 날씨 때문에 확인하지 못하였음. 다른 한 곳은 많은 주민들이 추천하는 장소로서 해뜰목인데, 두 곳의 조망점이 있음. 첫 번째 조망점에서는 근경인 골짜기 사이로 원경의 일출을 볼 수 있음. 또한 두 번째 조망점은 해안에 다가선 곳이기 때문에 근경이 바로 해면이며, 원경으로 일출이 보임. 해뜰목 일출의 특징은 뜨는 해와 좌측으로 만재도가 함께 보인다는 것임
-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 일몰 장소로는 섬등 반도 전망대, 섬등 반도 인근 전망대(도로에 인접한 곳에 위치), 독실산 정상에서 항리 마을로 내려오는 등산로 등 3곳이 있음. 이 중에서 근경과 중경으로서 섬등 반도와 원경으로서 일몰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장소는 등산로 상에 위치함. 섬등 반도 인근 전망대는 접근성이 좋으며 기존의 전망대를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도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신안군 가거도는 우리나라 서해 최서남단 이자 국경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근접한 중국 대륙의 의 닭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서해 남단의 육지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천연기념물 341호 구굴도 바닷새류 번식지, 소흑산도 등대와 함께 신석기 패총 등 자연생태적인 중요성과 함께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연혁·유래 및 특징

- 송나라때 중국의 사신,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경”에 당시 고려를 방문할 때 가거도를 지나면서 가거도를 협계산이라 칭하면서 송나라와 고려의 경계로

기록한 고문헌을 통해 서해 최서남단의 국경으로서 지정학적 가치와 함께 고지도에 등장하는 역사성과 함께 일제 강점기에 소흑산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원래의 이름인 가거도의 이름을 되찾아 바로 세우고, 가거도의 지형, 식물, 섬주민들의 삶에 연관된 전설, 문화유산과 더불어 섬등반도, 장군봉, 선녀봉 등의 수려한 경관과 우라나라에서 해가 제일 늦게 뜨고 늦게 지는 상징성을 부여하여 해돋이와 해넘이의 경관을 명승으로 지정하여 국민적 관심과 명승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유지 발전을 위하여 명승지정을 위한 조사와 검토의 필요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가거도에는 독실산(693m)을 중심으로 급경사의 해안의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해식애, 해식동굴, 해안의 단층등이 수려한 풍관을 이루고 있으며, 후박나무, 구실잣밤나무, 붉가시나무, 등의 상록활엽수림으로 이루어진 난대림이 잘 보존되어 있어 식생적인 측면에서도 특정 상록활엽수림대의 북방 한계선을 해당되어 학술적인 가치와 함께 자연식생이 주변의 경관과 잘 어우러져 가거도의 아름다운 해돋이와 해넘이의 명승자원과 더불어 명승으로서의 경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음.
- 근거기준: 한국의 서해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이라는 상징성과 섬등반도를 주변으로 한 수려한 경관적 가치와 더불어 해넘이의 장관을 명승으로 지정하여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 낼 근거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 명승지정 후 6개월 이내 수립예정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가거도의 명승 지정에 대한 장소는 역사성과 경관성이 우수한 장군봉과 섬등반도가 해당되나, 장군봉일대의 접근성이 군부대의 시설 및 접근제한, 그리고 해넘이의 경관이 섬등반도 지역보다 떨어져 섬등반도를 주변으로 한 해넘이 명승지정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 일대의 사유지에 대한 활용동의, 역사성, 전설, 지역정비, 경관 조망을 위한 탐방로 및 데크시설, 안전시설, 주차장 지정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이 필요함.

○ 문화재 가치

- 가거도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중국과의 무역을 위한 중간기항지로서 이용이 된 역사성과 함께, 주변의 구굴도의 바닷새류 번식지로서의 천연기념물(341호), 환경부 특정도서로서의 개린도, 해양수산부에 의해 가거도 해역이 원시적 자연경관과 해양생물의 다양성에 의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석기 시대의 패총과 대한민국 근대 유산으로서의 등대(문화재청

등록문화재 380호)와 가거도 멸치잡이 노래에 대한 무형문화재적 가치와 함께 명승으로 지정가치가 있는 섬등반도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해넘이의 명소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서해 최남단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늦게지는 장소로서의 상징성은 명승 지정에 따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관적 아름다움과 함께 서해최남단의 외로운 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애착심을 가짐과 동시에 수천년을 가거도에 거주하면서 거친 바다와 더불어 살아온 선조들의 삶과 정신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인문적, 사회적 가치를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경관

- 가거도의 해넘이에 대한 주요 경관요소는 해넘이 자체로서의 경관적 요소보다는 장군봉 및 섬등반도지역의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어우러지는 경관요소로서 가치로움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며, 망망대해로 넘어가는 해넘이를 바라보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낙조의 색이 섬등반도 일대의 해안절벽, 기암괴석뿐만 아니라 억새와 대나무의 일종인 이대(Sasa japonia) 군락과 어울어져 경관적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경관성을 지니고 있음. 이와 더불어 주변에 서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잘 보존되어 군무하는 바닷새들의 활공이 최상의 해넘이 경관을 조성함.

○ 원형 보존성

- 해넘이 경관으로서 섬등반도 일대는 해안절벽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적인 경관으로서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됨.

○ 차별성

- 서해안은 낙조에 대한 명승지역인 꽃지와 채석강이외도 오이도를 비롯한 유명한 낙조 경관을 지닌 곳이 많지만, 서해의 최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요인과 가장 늦게 해가 지는 상징성과 함께 가릴 것 없는 망망대해로 지는 해넘이의 아름다움과 섬등반도가 주는 특별한 원시적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함께 조망함할 수 있음.

○ 종합의견

- 가거도의 해넘이와 해돋이를 명승으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종합한 결과 해돋이의 조망을 위한 해뜰목의 조망지점은 해안 절벽에 설치된 조망대보다는 100여미터 이전에 설치된 조망점에서의 경관이 주변의 경관과 조화되어 나아보이며, 해돋이 조망에서 인근의 섬인 만재도가 해돋이 경관에 배경이 되기는 하나 시야에서 너무 멀고 해뜰목 조망점까지 등반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해돋이 명승지정에는 좀 더 신중히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됸됨.

- 가거도 해넘이의 명승 지정은 서쪽 방향으로 길게 뻗은 섬등반도를 배경으로 조망하는 조망점이 독실산 정상과 향리로 내려오는 도중 조망대가 설치되어 있어 접근이 쉽지 않고 향리에서 섬등반도를 배경으로 한 경관이 가장 우수함. 우리나라의 서해 최서남단에서 가장 늦게 해가 지는 상징성과 함께 가거도 해넘이의 명승지정 가치가 높다고 판돤됨,
- 지정구역의 경우 향리를 중심으로 한 조망지역을 명승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지역 일대의 사유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지정에 따른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며 새로운 조망대의 설치 및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와 가거항에서 향리까지의 도보 이동은 거리가 있어 쉽지 않으므로 해넘이 조망점까지의 교통수단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소장>**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가거도는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이며 역사문화자원으로 천연기념물 제341호 구굴도와 전남기념물 제130호 가거도 패총, 전남무형문화재 제22호 멸치잡이 노래, 등록문화재 제380호 가거도 등대 등이 있음.

○ 연혁·유래 및 특징

- 가거도는 예로부터 중국의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섬으로 불렸을 정도로 중국과 가까운 섬임. 고대부터 황해 사단 항로상에 위치해 당나라, 송나라 등과 신라, 고려 등의 선박이 왕래할 때 거처가는 곳이었음. 송나라 때 고려를 다녀간 사신단의 일원이었던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가거도가 협계산이란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1123년 5월28일 송나라 영파를 출발한 서긍은 6월 2일 협계산을 지났음. 서긍은 협계산을 중국과 고려의 경계로 기록하고 있음. 조선시대에 가가도라고 불리다 1896년 신안군이 전신인 지도군 창설 이후부터 가거도라 불렸음. 일제 강점기에는 소흑산도라 이름 붙여졌으나 해방 이후 다시 가거도로 회복됨. 가거도 주변 해역은 다양한 어류가 지나가는 길목이라 어장이 발달해서 철마다 수많은 어선들이 몰려들고 중국과의 경계인지라 중국 어선들도 자주 몰려와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함. 국경의 섬으로, 해양영토 수호의 첨병으로서 가치도 큼.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섬등반도 해넘이 지정가치: 대한민국 서해상의 끝 섬은 백령도와 격렬비열도, 가거도 등임. 이중 명승 8호 두무진이 있는 백령도가 동경 124도 53

분으로 가장 서쪽의 섬이고 그 다음이 동경 125도06분′에 위치한 가거도 그 다음은 동경 125°34′에 위치한 격렬비열도임. 백령도는 서해 최북단 끝섬, 격렬비열도는 서해 중부 끝섬, 가거도는 서해 최남단 끝섬이란 상징성이 있음. 모두 국가 영토의 최전방이란 상징성이 있고 영토 수호적 가치가 큼. 게다가 세 섬 모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가 늦게 지는 곳임. 두무진은 명승 8호로 지정되었고, 격렬비열도와 가거도는 서해 끝섬이란 상징성에 더해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빼어난 경관 가치가 있지만 문화재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거거도 섬등반도는 섬 내에서도 가장 서쪽임. 국경의 섬 가장 서쪽에서 해넘이는 국토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고 이국적 정취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역사문화명승으로서의 지정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 해뜰목 지정가치: 해뜰목은 가거도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곳이라 지명도 해뜰목임. 해뜰목에서는 만재도 옆으로 솟아오르는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데 국경의 섬에서 일출 또한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산 교육장이 될 수 있음. 게다가 서해에서 해넘이 뿐만 아니라 해돋이도 동시에 볼 수 있는 빼어난 경관은 희귀함. 해뜰목은 서해에서 해돋이 명승지로 지정가치가 크다고 판단됨
- 근거기준: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경관(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지정기준 4에 해당)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 명승지정 후 6개월 이내 수립예정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신안 가거도 일원에 대한 총합적인 자원(지형, 지질, 식물, 경관, 역사적 사실 등)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함.

○ 문화재 가치

- 해넘이 명승지인 항리 마을 섬등반도 남쪽해안은 파도가 심해 전 해안에 크고 작은 해식동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음. 섬등반도 북쪽 암석해안은 파식작용의 영향으로 유문암 주상절리를 따라 대규모 수직 해식애가 발달하고 있으며, 그 일부가 떨어져 나가 시스택을 형성하고 있음. 섬등반도 남서해안 해식애의 염풍화혈은 안산암과 유문암 간의 경연차에 따른 차별침식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규모가 크고 다채롭고 희귀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어 경관 가치가 큼. 섬등반도에서 중국 방향으로 지는 해넘이 풍경은 국토의 소중함을 거듭 일깨워주는 인문환경적 가치가 뛰어남.

○ 경관

- 가거도는 중앙에 위치한 독실산(639m)을 중심으로 북서-남동으로 김. 전체적으로 산지가 해안까지 뻗어 있어 대규모 수직해식애와 해식동, 시스택, 폭포 등이 발달해 있음. 이들 해안지형이 상록활엽수림과 어우러져 다채롭고 수려한 경관을 제공함. 독실산, 회룡산과 장군섬, 기둥바위와 돛바위, 섬등병풍바위와 망부석, 구절골짝 살구꽃, 망향바위와 소등일출, 남문등대와 고랫여, 국흘도와 칼바위 등이 가거 8경으로 꼽힘. 가거 8경 모두가 명승이고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음. 특히 해넘이 장소인 섬등반도는 주상절리를 이루어 섬등병풍 바위라고도 불리는데 그 경관적 가치가 빼어남.

○ 원형 보존성

- 섬등반도와 해뜰목을 비롯해 회룡산, 국흘도 등의 경관요소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 차별성

- 섬등반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가 늦게 지는 곳이라는 특성으로 다른 해넘이 장소와 차별성이 있으며 해뜰목은 서해에서 해돋이와 해넘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경관이라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 종합의견

- 가거도는 대한민국 최서남단 섬이자 중국과 국경을 맞댄 국경의 섬으로 영토수호의 최전방이란 가치가 크며 섬 전체가 태고의 자연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어 경관가치도 뛰어남. 육지에서 접근이 어려운 낙도라는 점이 섬의 난개발을 방지해 뛰어난 자연자원을 보존할 수 있었음. 거거8경 모두가 명승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임. 특히 섬등반도나 해뜰목은 서해에서 해동이 해넘이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적 가치가 탁월함. 하지만 가거도 또한 점차 5시간이 걸리던 육지와의 교통시간이 3시간으로 단축되고 선편도 1일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면서 개발의 바람이 자연생태계를 위협할 여지가 커지고 있음. 난개발로 파괴되기 전에 빼어난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명승으로 서둘러 지정해 보호해야할 이유가 충분함.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안건번호 천기 2020-07-02

2.「성락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해제

가. 제안사항

명승 제35호「성락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해제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명승 제35호「성락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해제를 심의하는 사항임

추진경과

▶ 1992년 사적(제378호) 지정 이후 명승으로 재분류(명승 제35호, '08.1.8.)
▶ 지정가치*에 대한 의문 제기 : '19.5.2. 성락원 문화재적 가치 의혹제기(***)
▶ '19.6~7월 : 문화재 지정보고서 및 회의록 등 관련자료 검토, 지정과정 전반 재조사 · '19.6.27. 성락원 관계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
▶ '19.6~10월 : 관계 전문가(고문헌, 각자, 조경 등) 자문회의(총 3회)
▶ '19.8.23. 성락원 논란 관련 공개토론회 실시
▶ '19.10~12월 : 법률검토(******), 역사 고증(*******) 실시(총 4회)
▶ '20.5.4. : 현지조사 실시
▶ '20.6.24 :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 검토(가결)
▶ **'20.7.14~8.12. : 지정해제 예고(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해제내용

○ 문화재명 : 명승 제35호「성락원」
○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2-22번지 등
○ 지정면적 : 14,407㎡
○ 지 정 일 : 2008.01.08.
○ 해제사유 : 명승 지정사유의 오류

* **(조성자)** 당초 지정사유였던 '조선 철종대 이조판서 심상응' 부존재, **(지정명칭)** '성락원' 명칭 관련 역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1950년대 이후 조어된 것으로 판단됨

지정사유 2008.1.8.(문화재청고시 제2008-1호)

-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이었던 것을 의친왕 이강이 별궁으로 사용한 곳으로 전통 별서정원 중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 있으며 조선시대 민가 정원으로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임.
-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조성된 별서정원으로 정자, 연못, 계류, 석정, 석상, 괴석 등 다양한 전통 양식의 정원요소들이 주변 자연 숲과 잘 조화되어 경관이 뛰어난 명승지임.

라. 검토의견 (******)

○ 명승 제35호「성락원」은 그 지정명칭 및 지정사유 등의 오류가 일부 인정되는 바, 사회적 논란을 불식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지정 해제함이 타당함.

○ 다만 성락원은 별서 조성 이전에도 경승지로 널리 이용된 점, 고종 당시 서법으로 이름난 내관 황윤명이 조성한 점, 갑신정변 당시 명성왕후의 피난처로서 사용된 점 등의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며, 다양한 전통정원요소들이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어 있어 경관적 가치 또한 뛰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명승으로서의 경관적·역사적 가치가 있음이 확인되므로, 재지정의 절차를 거쳐 문화재 명칭 및 지정사유를 새로이 함이 타당함.

마.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20.5.4.)

<* 문화재위원>**

○ 성락원은 서울 내 얼마 남지 않은 조선시대 정원유적이며, 고종 당시 내관인 황윤명(黃允明, 1844-1916)이 조성한 정원으로, 대부분 사대부가 조성한 현전하는 조선시대 정원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특히 갑신정변 당시 명성왕후의 피난처로서 **역사적 가치**가 뛰어남.

○ 조영자 황윤명은 육교시사(六橋詩社)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문인으로서의 성향이 강한 조영자는 정원의 주요 경관요소인 수계를 이용한 연지 등의 배치 등에서 풍수적인 요소를 공간 속에 투영시켜 합리적인 건물배치를 하는 등 복거의 조건을 경관미학적으로 연계 등 **정원의 장소적 가치**가 뛰어남.

○ 성락원은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조성된 정원으로, 동시대의 여타의 정원과 비교하여, 단아하고, 섬세한 형태를 띄며, 건물을 중심으로 한 차경미적인 구성요소들이 다양하고, 연못, 계류 등 다양한 전통정원요소들이 주변 자연숲과 잘 조화되어 **경관적 가치**가 뛰어남.

○ 특기사항으로 조사대상 정원의 조영자가 황윤명으로 밝혀진 것을 토대로 **기존 '성락원의 명칭변경'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위원>**

○ 명승 제 35호 성락원은 지정 당시 관련 인물 '이조판서 심상응' 부존재 및 각자의 진위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재규명해 본 결과, 조선 고종 당시 내관인 황윤명이 조성한 별서로 확인되었음. 명승적 가치에 대한 분석 결과, 쌍괴당, 삼가루, 추성각 등 **역사적 건조물이 확인**되고, 영벽지 일원에 연못을 조성하고 석가산을 배치하였으며, 영벽지, 쌍류동천, 송석, 장빙가 등 **각자 6기는 여러 시대에 걸쳐 새겨진 역사성**을 갖고 있음

○ 아름다운 계류 및 연못, 식생, 지형 경관을 가진 경승지로서 각자가 남아 있으며, 고종대 내관이자 문인이 조성한 정원으로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조선시대 정원유적으로 **희귀성**과 더불어 갑신정변 당시 명성왕후의 피난처로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명승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1960년대 통행로 개설, 축대 및 보의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자연 계류의 형태, 지형 경관, 연못, 식생 등 자연경관의 훼손 및 변형이 심각하며, 쌍괴당 등 역사적 건조물이 없어지고 본재, 송석정 등 새로운 건물이 건축되어 역사적 가치가 낮아짐.

○ 향후 명승으로서 경관성과 역사성을 회복하고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리와 지질 특성을 면밀히 조사분석 및 고증을 통하여 자연 계류 및 연못과 지형경관을 원형으로 회복해야 하며, 자연환경에 적합한 전통 식생으로 정비되어야 함. 외부로 부터 반입된 돌을 이용한 축석과 콘크리트 보는 철거되어야 하며, 송석정 북측의 못과 인접한 택지와 건물의 관계도 경관적, 구조적 측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문화재전문위원>**

○ 성락원은 쌍류동천 계류를 끼고 아름다운 수목석(水木石) 풍광이 비밀스럽게 펼쳐진 별서명원 사례인데, 외부와는 시각적으로 단절된 세계이나 내명당수 물길을 따라 내부로 진입하면서 점입가경을 만나게 되는 경관구조임. 살림집 본재를 중심으로 10% 내외의 완만한 자연형 물길을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점승하는 진출입동선체계를 반영하였고, 생토(生土)에 기반 한 토지이용 공간구성체계를 설정했는데, ① 성락원 동문(洞門)에 해당하는 전원(쌍류동천과 용두가산), ② 본재와 동서방향으로 마주하는 내원(영벽지, 바위글씨, 소단폭포가 펼쳐진 수석 경관), ③ 가장 깊숙이 자리한 후원(송석정과 연못, 암반 계류, 고엽약수와 동산숲, ④ 담장 밖 마을길로 분절된 별원(저수지를 포함하는 뒷동산)으로 구분됨

○ 별서원림은 ① 초대 원주(園主) 황윤명(1844-1916, 대한제국 고종조 내관 신분, 서법에 뛰어난 문인)의 별서경영과 2대 원주 의친왕 이강(1877-1955, 고종의 5남, 독립운동가)의 인물적 차별성과 역사성, ② 빼어난 자연수석경관이

현존하고, 조선 후기 명사들의 향유처이자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향유되고 있는 명소성, ③ 경관기법의 진수를 보여주는 차경법과 수석경관, 영지(影池, 영벽지)기법, 천원지방 석가산, 누정각(삼가루, 추성각 산정, 계정), 정심수(雙槐樹), 송석(松石), 취병 등 전통조경 및 작정기법의 진수를 보여주는 탁월성, ④ 명인들의 바위글씨와 시문 등 금석예술, ⑤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 피난처로서의 역사교육 장소성, ⑥ 토속신앙과 도교 및 유교적 관념세계, 풍수적 자리잡기 및 비보경관 등 복합문화경관이 펼쳐지는 **독보적 별서명원사례임**

○ 따라서, 해방이후 일부 건조물의 변형과 증축이 이루어 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①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명승) 지정이후 지속적인 복원화 과정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원형경관 회복, ② 관련인물의 특수성과 역사적 장소성과 명소성, ③ 원지형을 존중하며 구성한 점입가경의 경관구성 체계, ④ 불명료했던 원주와 원림요소 및 성격, 원형경관 등에 대한 사료적 고증, ⑤ 전통조경과 경관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정기법과 상징성, ⑥ 조선후기에 조성되어 현존하는 서울권역의 독보적 원림 유산, ⑦ 문화재 지정과 고증, 그리고 보존관리와 복원가치의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시킨 대표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승'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유효**하다는 판단됨

○ 이곳 원림의 명칭과 관련하여 ① 춘파유고에 기술된 쌍류동(雙流洞), 쌍계 등의 명칭과 장소성, ② 현존하는 입구 경내의 쌍류동천 바위글씨에 근거한 식별성 및 정체성 확보, ③ 별서 원주의 변화과정(황윤명→의친왕 이강→심상준)을 감안하여 특정인물 관련 명칭 부여 한계, ④ 명승 제36호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 명명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950년대 새롭게 작명된 '성락원'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며, **'서울 성북동 쌍류동천'으로 정정,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前문화재위원>**

○ 현재의 성락원은 1992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할 때 역사적 고증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최초 조영자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락원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음.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명칭은 역사적 근거를 가진 것으로 대체해야 할 것**임.

○ 현재의 성락원은 황윤영의 별서정원과 비교할 때 그 입지환경은 물론이고 원림의 규모, 형태, 기능의 측면에서 거의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의 성락원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중에서 **경관적 가치는 물론이고 이에 동반하여 예술적 가치가 적지 않게 훼손되거나 저하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재분류된 이후, 즉 2008~2009년 '성락원 복원화 사업'을 통해 성락원이 가지는 원래의 경관적 가치가 다소 회복된 것은 그 나름대로 문화재 가치의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됨.

○ 결론적으로 현재의 성락원은 역사상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의 현장으로 기억될만한 가치, 즉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선시대 한양도성 내외에서 별서정원의 조성, 그리고 그 이후의 전승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증거 자료를 제공하므로 **학술적 가치**가 결코 적지 않다고 판단됨.

<* 前문화재위원>**

○ 경관성

- 조선시대의 명승지(名區) 북저동(北渚洞) 일대는 유상곡수연을 즐기던 곳
- 현재의 성북동은 조선시대에는'북저동(北渚洞)', 혹은 '도화동(桃花洞)'으로 불리웠는데, 윤기(尹愭)의 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시대 자연경관이 뛰어난 '名區(명승지)'로서 많은 기록들을 찾아 볼 수 있음. 또한 무명자(無名子) 윤기(尹愭, 1741~1826)가 남긴 시 '上巳遊北渚洞'에는 상사일에 유상곡수연을 하였던 기록이 있어 경관적 학술적(전통조경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나타내는 자료임. 우리나라에서 유상곡수연의 유적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유적으로 판단됨.

○ 역사성과 학술성

- 성락원에는 서로 다른 7개의 각자가 남아 있어, 이 별서 지역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역사적 문화층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경관글씨체가 주목할만한 문화재적 가치를 더해 주는 것으로 판단 됨. 그 가운데에는 '檣氷家'라고 쓴 추사 글씨체가 있음. 장빙가(檣氷家) 글씨에 완당(阮堂) 이라고 추사 김정희의 호가 새겨져 있음. 일설에 의하면 장외가(檣外家)라는 주장이 있지만 '담장 장(墻)'이 아니라 '돗대 장(檣)'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 임. 따라서 장빙(檣氷)은 아주 기다란 고드름을 의미하고 있음. 게다가 '집 가(家)'자의 갓머리 부수가 쓰러져 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 더더욱 별서 의미와 맞닫고 있음.
- 황윤명의 문집 춘파유고와 관련 문헌들에 기록된 건조물은 삼가루(三可樓), 초당(草堂), 쌍괴실(雙槐室) / 쌍괴누옥(雙槐陋屋), 추성각(秋聲閣) 등의 건축물이 확인됨
- 북저동 가운데 별서가 위치한 쌍류동은 특별히 구분되는 곳(城北洞中別有村)이었는데, 등나무, 소나무, 대나무가 우거진 곳(藤蘿松竹境昏昏)으로, 명승지에 위치한 별서(名區卜築幾多年)이었음. 별서의 형태는 수원(隨園)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소쇄원의 별서 형태와 비교할 만큼 심원(陋室深園遠世凡)의 특징적인 배치 형태를 보인 명원(莫道名園無定主)이었음.

<* 前문화재위원>**

○ 성락원은 문인내시라는 독특한 작정자와 왕족의 별서, 50년대 당시 국가적 필요성 차원에서의 관광지 개발, 이후 전란과 급격한 도시화를 거치면서도 대도시 내에 존속되어온 민간소유 한국정원 등의 **다양한 역사적 층위가 누적된 곳**임

○ 그 중에서 한국정원의 관점에서는 자연 계류와 지형, 그리고 암석 등이 이루는 입지적 특성과 공간구성, 경관연출 등에서 한국전통 정원의 미학이 잘 살아 있는 역사문화적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서울시에 현존하는 조선시대 민간정원으로서 의미와 희소 가치가 각별**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재 명승으로 지정된 사유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 분명해진 상태이므로, 이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전면 수정, 반영하여 명승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성락원이라는 이름도 관광지 개발 시점과 관련된 특정 시기의 산물임이 밝혀졌으므로 추후 역사적 사실과 고증을 토대로 한 재논의, 연구를 거쳐 **적절한 명칭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최근 유네스코나 이코모스에서 특정 시기의 유형적 자산만이 아니라 누적된 다양한 시간적 층위와 무형적 가치(intangible value)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성락원의 문화재적 가치는 조선말 황윤명의 정원만이 아니라 왕족의 별서, 관광지로서 성락원, 이후 민간소유 한국정원 등으로 변천해온 과정을 총체적으로 포함하여 전체적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前문화재위원>**

○ 성락원은『춘파유고』의 시문과 『정선총쇄록』등의 기록 등과 일치하는 곳으로 정원문화의 역사적 가치가 검증되고 지형 및 유적 유규 등이 대체적으로 보존 되어 있는 공간으로 **정원문화사적 가치**가 있으며, 특히 600년 서울 도읍의 대표적 정원문화가 대부분 소실 및 멸실 된 상황에서 지금껏 보존되어 전해지는 곳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안건번호 천기 2020-07-03

3.「서울 성북동 별서」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 성북동 별서」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명승「성락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해제와 관련하여,「서울 성북동 별서」의 재지정을 심의하는 사항임

○ 추진경과

- '20.05.04 : 현지 지정조사 실시
- '20.06.24 :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 검토(조건부 가결)
  (조건 : 임시 명칭은 서울 성북동 별서로 하되 지정명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정 심의 시 재검토함)
- '20.07.14~08.12. : 지정예고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지정명칭 : 서울 성북동 별서
- 한문 : 서울 城北洞 別墅
- 영문 : Garden in Seongbuk-dong, Seoul

○ 지정종별 : 명승

○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2-22번지 등

○ 지정가치
- (역사성·학술성)별서 조성 이전에도 경승지로 널리 이용되었으며, 고종 대의 내관인 황윤명이 조성하여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가 피난처로 사용된 곳임.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조선시대 민가정원으로서 보존·연구의 가치가 있음
- (경관성)자연 계류와 지형, 암석 등이 잘 어우러져 공간구성 및 경관연출 등의 측면에서 한국전통 정원으로서의 미학이 살아있음

○ 문화재지정구역 : 18필지 / 14,407㎡

○ 관리단체 : 서울시 성북구

라. 문화재 현황

ㅇ 입지 및 경관

- 별서조성 이전 조선시대에는 '북저동(北渚洞)', 혹은 '도화동(桃花洞)'으로 불리운 경승지였던 성북동 일대에 입지하며, 북한산 문수봉에서 뻗어 내린 구준봉을 배산으로 남산(잠두봉)을 안대삼아 남향한 전형적인 풍수적 자리잡기 구조를 보임.
- 총쇄록에 묘사된 경관구성과 춘파유고의 시문에 담긴 삼가루·쌍괴실·석가산 등 정원요소로 인해 조선시대 정원유적임을 확인 가능하며, 계류와 암석, 그리고 지형이 연출하는 계류경관이 뛰어남.

ㅇ 연혁·유래

- 『춘파유고(春坡遺稿)』에 수록된 <인수위소지(引水爲小池> 시문이 성락원내 영벽지 각자와 시문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여 조선 고종 당시 내관인 황윤명(黃允明, 1844-1916)이 조성한 별서였음이 확인됨
- 갑신정변(1884) 당시 명성황후가 황윤명의 별서를 피난처로 사용했다는 기록('일편단충' 김규복의 발문)에 따라 1884년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짐

ㅇ 지정 대상 및 범위

- 18필지 / 14,407㎡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 면적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2	대	2,536	2,536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55(성북동)	(*)****
	2-95	대	1,021	1,0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55(성북동)	(*)****
	2-96	대	654	65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55(성북동)	(*)****
	2-98	대	641	64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611동 2303호(정자동, 파크뷰)	***
					제주특별자치시 제주시 인다1길 20 , 108동 102호(아라일동, 아라아이파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길 2, 101동 401호(방배동, 방배한진로즈힐아파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길63, 104동 2301호(성수동1가, 쌍용아파트)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40,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 면적	주소	성명
					104동 903호(금호동1가, 이편한세상금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33, 803호(하왕십리, 텐즈힐)	***
					경기도 고양시 인산서구 하이파크3로 61, 414동 1403호(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일산파밀리에4단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51나길 15, 103동 201호(공릉동, 태현현대홈타운스위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9, 73동 202호(반포동, 반포아파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5번길 20, 945동 903호(영통동, 벽적골롯데아파트)	***
					경기도 부천시 옥길로 80, 603동 101호(옥길동, 에에이치옥길브리즈힐)	***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1길 74, 1912동 1401호(목동, 호반베르디움 센트럴포레)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23길 22-13, 501호(가락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86-20, 3층 302호(동승동, 청기와빌라3차)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안로 53, 112동 604호(검안동, 풍림아이원2차)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0나길 57, 102동 603호(사당동, 케이씨씨아파트)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7길 11(사당동)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267번길 7-6(판교동)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3길 29, 513호(방배동, 한신트리플아파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11길 25, 302호(양재동, 제이원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30, 1506동 1205호(주엽동,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 면적	주소	성명
					강선마을)	
					경기도 부천시 옥길로 80, 601동 603호(옥길동, 에에이치옥길브리즈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21, 501동 601호(고잔동, 안산고잔5차푸르지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605동 2604호(정자동, 파크뷰)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73, 2006동 2104호(삼송동, 삼송2차아이파크)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4길 46, 201동 801호(구로동, 현대연예인아파트)	***
	5-1	대	601	60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4, 102-1403(사직동, 광화문풍림스페이스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1길 84, 503호(연남동, 리츠아파트)	***
	5-2	대	178	17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55(성북동)	(*)****
	7	대	645	64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55(성북동)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00, 1007동 1303호(구미동, 무지개마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53(성북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53(성북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29-8(성북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7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8	**
	8-5	유	142	14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55(성북동)	(*)****
	8-6	대	456	456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55(성북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8-22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4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 면적	주소	성명
					29-8(성북동)	
	8-7	구	40	4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55(성북동)	(*)****
	8-8	대	155	15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55(성북동)	(*)****
	8-10	대	3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55(성북동)	(*)****
	산12-3	임	5,712	5,7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112(성북동)	**
	산12-7	임	724	724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 121, 다동(성북동)	**
	8	전	119	10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5-1	***
	8-1	유	555	4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 121, 다동(성북동)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길 5-12, 101호(양재동, 범양빌라)	***
	8-29	임	1,324	164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 121, 다동(성북동)	**
	산11-10	임	582	219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 121, 다동(성북동)	**
계	18필지		16,088	14,407		

○ 지정구역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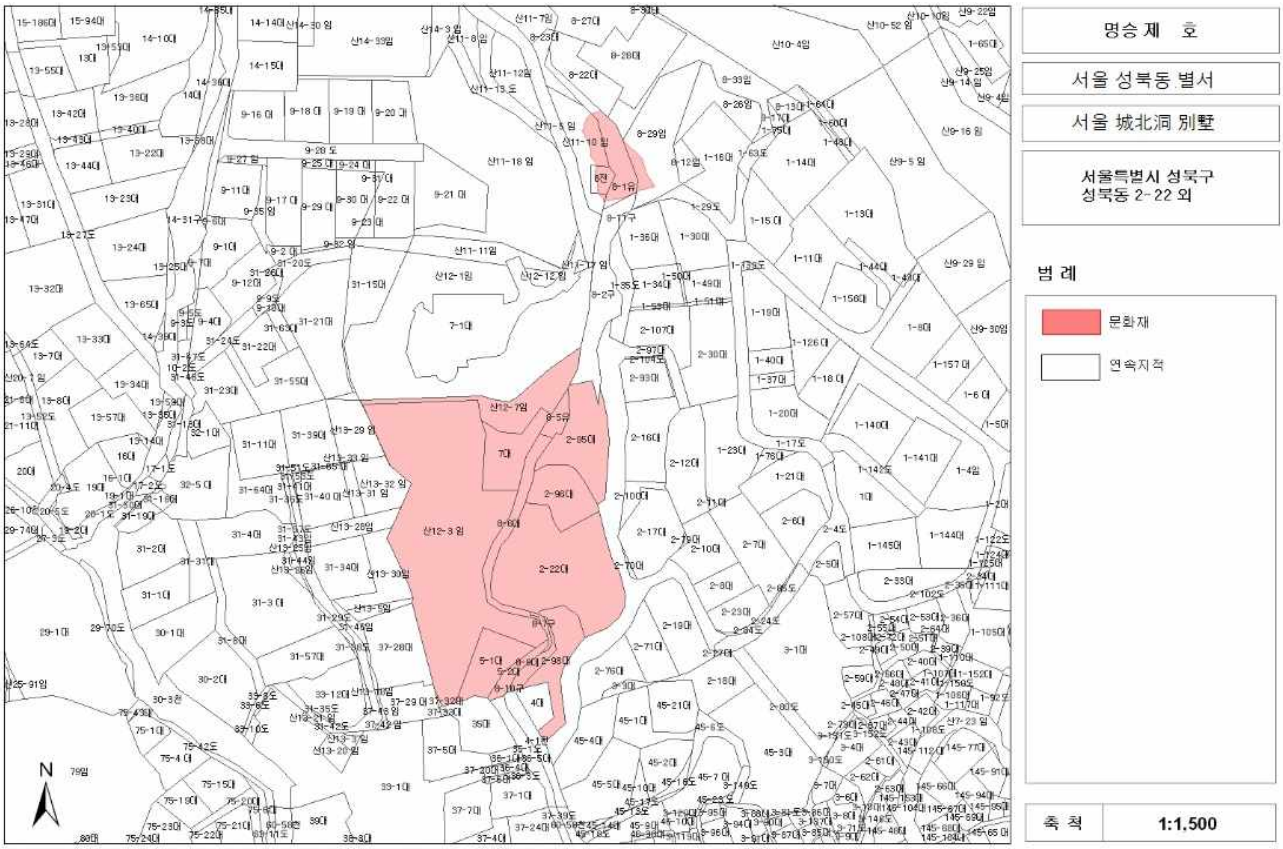

마. 검토의견 (******)

○ 별서 조성 이전에도 경승지로 널리 이용되다가, 고종 당시 서법으로 이름난 내관 황윤명이 별서로 조성한 사실이 입증된 점, 갑신정변(1884) 당시 명성왕후의 피난처로서 사용된 점 등의 역사적 가치가 뛰어남

○ 다양한 전통정원 요소들이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어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명승으로서의 경관적 가치가 있음이 확인되므로, 기존「성락원」에서 문화재 명칭 및 지정사유를 수정하여 재지정함이 타당함

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20.5.4.)

<* 문화재위원>**

○ 성락원은 서울 내 얼마 남지 않은 조선시대 정원유적이며, 고종 당시 내관인 황윤명(黃允明, 1844-1916)이 조성한 정원으로, 대부분 사대부가 조성한 현전하는 조선시대 정원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특히 갑신정변 당시 명성왕후의 피난처로서 **역사적 가치**가 뛰어남.

○ 조영자 황윤명은 육교시사(六橋詩社)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문인으로서의 성향이 강한 조영자는 정원의 주요 경관요소인 수계를 이용한 연지 등의 배치 등에서 풍수적인 요소를 공간 속에 투영시켜 합리적인 건물배치를 하는 등 복거의 조건을 경관미학적으로 연계 등 **정원의 장소적 가치**가 뛰어남.

○ 성락원은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조성된 정원으로, 동시대의 여타의 정원과 비교하여, 단아하고, 섬세한 형태를 띄며, 건물을 중심으로 한 차경미적인 구성요소들이 다양하고, 연못, 계류 등 다양한 전통정원요소들이 주변 자연숲과 잘 조화되어 **경관적 가치**가 뛰어남.

○ 특기사항으로 조사대상 정원의 조영자가 황윤명으로 밝혀진 것을 토대로 **기존 '성락원의 명칭변경'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위원>**

- ㅇ 명승 제 35호 성락원은 지정 당시 관련 인물 '이조판서 심상응'부존재 및 각자의 진위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재규명해 본 결과, 조선 고종 당시 내관인 황윤명이 조성한 별서로 확인됨. 명승적 가치에 대한 분석 결과, 쌍괴당, 삼가루, 추성각 등 **역사적 건조물이 확인**되고, 영벽지 일원에 연못을 조성하고 석가산을 배치하였으며, 영벽지, 쌍류동천, 송석, 장빙가 등 **각자 6기는 여러 시대에 걸쳐 새겨진 역사성**을 갖고 있음
- ㅇ 아름다운 계류 및 연못, 식생, 지형 경관을 가진 경승지로서 각자가 남아 있으며, 고종대 내관이자 문인이 조성한 정원으로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조선시대 정원유적으로 **희귀성**과 더불어 갑신정변 당시 명성왕후의 피난처로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명승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ㅇ 그러나 **1960년대 통행로 개설, 축대 및 보의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자연 계류의 형태, 지형 경관, 연못, 식생 등 자연경관의 훼손 및 변형이 심각하며, 쌍괴당 등 역사적 건조물이 없어지고 본재, 송석정 등 새로운 건물이 건축되어 역사적 가치가 낮아짐.
- ㅇ 향후 명승으로서 경관성과 역사성을 회복하고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리와 지질 특성을 면밀히 조사분석 및 고증을 통하여 자연 계류 및 연못과 지형경관을 원형으로 회복해야 하며, 자연환경에 적합한 전통 식생으로 정비되어야 함. 외부로 부터 반입된 돌을 이용한 축석과 콘크리트 보는 철거되어야 하며, 송석정 북측의 못과 인접한 택지와 건물의 관계도 경관적, 구조적 측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문화재전문위원>**

- ㅇ 성락원은 쌍류동천 계류를 끼고 아름다운 수목석(水木石) 풍광이 비밀스럽게 펼쳐진 별서명원 사례인데, 외부와는 시각적으로 단절된 세계이나 내명당수 물길을 따라 내부로 진입하면서 점입가경을 만나게 되는 경관구조이다. 살림집 본재를 중심으로 10% 내외의 완만한 자연형 물길을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점승하는 진출입동선체계를 반영하였고, 생토(生土)에 기반 한 토지이용 공간 구성체계를 설정했는데, ① 성락원 동문(洞門)에 해당하는 전원(쌍류동천과 용두가산), ② 본재와 동서방향으로 마주하는 내원(영벽지, 바위글씨, 소단폭포가 펼쳐진 수석 경관), ③ 가장 깊숙이 자리한 후원(송석정과 연못, 암반 계류, 고엽약수와 동산숲, ④ 담장 밖 마을길로 분절된 별원(저수지를 포함하는 뒷동산)으로 구분됨
- ㅇ 별서원림은 ① 초대 원주(園主) 황윤명(1844-1916, 대한제국 고종조 내관 신분, 서법에 뛰어난 문인)의 별서경영과 2대 원주 의친왕 이강(1877-1955, 고종의 5남, 독립운동가)의 인물적 차별성과 역사성, ② 빼어난 자연수석경관이

현존하고, 조선 후기 명사들의 향유처이자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향유되고 있는 명소성, ③ 경관기법의 진수를 보여주는 차경법과 수석경관, 영지(影池, 영벽지)기법, 천원지방 석가산, 누정각(삼가루, 추성각 산정, 계정), 정심수(雙槐樹), 송석(松石), 취병 등 전통조경 및 작정기법의 진수를 보여주는 탁월성, ④ 명인들의 바위글씨와 시문 등 금석예술, ⑤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 피난처로서의 역사교육 장소성, ⑥ 토속신앙과 도교 및 유교적 관념세계, 풍수적 자리잡기 및 비보경관 등 복합문화경관이 펼쳐지는 **독보적 별서명원사례임**

○ 따라서, 해방이후 일부 건조물의 변형과 증축이 이루어 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①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명승) 지정이후 지속적인 복원화 과정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원형경관 회복, ② 관련인물의 특수성과 역사적 장소성과 명소성, ③ 원지형을 존중하며 구성한 점입가경의 경관구성 체계, ④ 불명료했던 원주와 원림요소 및 성격, 원형경관 등에 대한 사료적 고증, ⑤ 전통조경과 경관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정기법과 상징성, ⑥ 조선후기에 조성되어 현존하는 서울권역의 독보적 원림 유산, ⑦ 문화재 지정과 고증, 그리고 보존관리와 복원가치의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시킨 대표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승'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유효**하다는 판단됨

○ 이곳 원림의 명칭과 관련하여 ① 춘파유고에 기술된 쌍류동(雙流洞), 쌍계 등의 명칭과 장소성, ② 현존하는 입구 경내의 쌍류동천 바위글씨에 근거한 식별성 및 정체성 확보, ③ 별서 원주의 변화과정(황윤명→의친왕 이강→심상준)을 감안하여 특정인물 관련 명칭 부여 한계, ④ 명승 제36호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 명명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950년대 새롭게 작명된 '성락원'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며, **'서울 성북동 쌍류동천'으로 정정,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前문화재위원>**

○ 현재의 성락원은 1992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할 때 역사적 고증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최초 조영자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락원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음.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명칭은 역사적 근거를 가진 것으로 대체해야 할 것**임.

○ 현재의 성락원은 황윤영의 별서정원과 비교할 때 그 입지환경은 물론이고 원림의 규모, 형태, 기능의 측면에서 거의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의 성락원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중에서 **경관적 가치는 물론이고 이에 동반하여 예술적 가치가 적지 않게 훼손되거나 저하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재분류된 이후, 즉 2008~2009년 '성락원 복원화 사업'을 통해 성락원이 가지는 원래의 경관적 가치가 다소 회복된 것은 그 나름대로 문화재 가치의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됨.

○ 결론적으로 현재의 성락원은 역사상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의 현장으로 기억될만한 가치, 즉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선시대 한양도성 내외에서 별서정원의 조성, 그리고 그 이후의 전승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증거 자료를 제공하므로 **학술적 가치**가 결코 적지 않다고 판단됨.

<* 前문화재위원>**

○ 경관성

- 조선시대의 명승지(名區) 북저동(北渚洞) 일대는 유상곡수연을 즐기던 곳
- 현재의 성북동은 조선시대에는'북저동(北渚洞)', 혹은 '도화동(桃花洞)'으로 불리웠는데, 윤기(尹愭)의 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시대 자연경관이 뛰어난 '名區(명승지)'로서 많은 기록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무명자(無名子) 윤기(尹愭, 1741~1826)가 남긴 시 '上巳遊北渚洞'에는 상사일에 유상곡수연을 하였던 기록이 있어 경관적 학술적(전통조경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나타내는 자료임. 우리나라에서 유상곡수연의 유적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유적으로 판단됨.

○ 역사성과 학술성

- 성락원에는 서로 다른 7개의 각자가 남아 있어, 이 별서 지역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역사적 문화층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경관글씨체가 주목할만한 문화재적 가치를 더해 주는 것으로 판단 됨. 그 가운데에는 '檣氷家'라고 쓴 추사 글씨체가 있음. 장빙가(檣氷家) 글씨에 완당(阮堂) 이라고 추사 김정희의 호가 새겨져 있음. 일설에 의하면 장외가(檣外家)라는 주장이 있지만 '담장 장(墻)'이 아니라 '돗대 장(檣)'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 임. 따라서 장빙(檣氷)은 아주 기다란 고드름을 의미하고 있음. 게다가 '집 가(家)'자의 갓머리 부수가 쓰러져 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 더더욱 별서 의미와 맞닫고 있음.
- 황윤명의 문집 춘파유고와 관련 문헌들에 기록된 건조물은 삼가루(三可樓), 초당(草堂), 쌍괴실(雙槐室) / 쌍괴누옥(雙槐陋屋), 추성각(秋聲閣) 등의 건축물이 확인됨
- 북저동 가운데 별서가 위치한 쌍류동은 특별히 구분되는 곳(城北洞中別有村)이었는데, 등나무, 소나무, 대나무가 우거진 곳(藤蘿松竹境昏昏)으로, 명승지에 위치한 별서(名區卜築幾多年)이었음. 별서의 형태는 수원(隨園)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소쇄원의 별서 형태와 비교할 만큼 심원(陋室深園遠世凡)의 특징적인 배치 형태를 보인 명원(莫道名園無定主)이었음.

<* 前문화재위원>**

○ 성락원은 문인내시라는 독특한 작정자와 왕족의 별서, 50년대 당시 국가적 필요성 차원에서의 관광지 개발, 이후 전란과 급격한 도시화를 거치면서도 대도시 내에 존속되어온 민간소유 한국정원 등의 **다양한 역사적 층위가 누적된 곳**임

○ 그 중에서 한국정원의 관점에서는 자연 계류와 지형, 그리고 암석 등이 이루는 입지적 특성과 공간구성, 경관연출 등에서 한국전통 정원의 미학이 잘 살아 있는 역사문화적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서울시에 현존하는 조선시대 민간정원으로서 의미와 희소 가치가 각별**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재 명승으로 지정된 사유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 분명해진 상태이므로, 이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전면 수정, 반영하여 명승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성락원이라는 이름도 관광지 개발 시점과 관련된 특정 시기의 산물임이 밝혀졌으므로 추후 역사적 사실과 고증을 토대로 한 재논의, 연구를 거쳐 **적절한 명칭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최근 유네스코나 이코모스에서 특정 시기의 유형적 자산만이 아니라 누적된 다양한 시간적 층위와 무형적 가치(intangible value)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성락원의 문화재적 가치는 조선말 황윤명의 정원만이 아니라 왕족의 별서, 관광지로서 성락원, 이후 민간소유 한국정원 등으로 변천해온 과정을 총체적으로 포함하여 전체적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前문화재위원>**

○ 성락원은『춘파유고』의 시문과 『정선총쇄록』등의 기록 등과 일치하는 곳으로 정원문화의 역사적 가치가 검증되고 지형 및 유적 유규 등이 대체적으로 보존 되어 있는 공간으로 **정원문화사적 가치**가 있으며, 특히 600년 서울 도읍의 대표적 정원문화가 대부분 소실 및 멸실 된 상황에서 지금껏 보존되어 전해지는 곳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안건번호 천기 2020-07-04

4.「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 윗세오름대피소 증축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 기존 윗세오름대피소를 증축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 기존 윗세오름대피소를 증축하기 위해 신청한 사항임. 참고로 동 건은 2020년 제4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5.27.)에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의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한라산천연보호구역」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지 정 일 : 1966.10.12.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윗세오름대피소 철거 및 증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6(윗세오름)

○ 사업내용

구 분	기 존	1차 신청/부결 (2020.5.27.)	금회신청 (2020.8.26.)	비고
건축면적	46.8㎡	48.04㎡	21.6㎡	△26.44㎡
건축연면적	59.76㎡ (지상 46.8㎡, 지하 12.96㎡)	114.68㎡ (지상 48.04㎡, 지하 66.64㎡)	115.20㎡	0.52㎡
최고높이	6.7m (지상 4.3m, 지하 2.4m)	8.3m (지상 5.15m, 지하 3.15m)	5.7m	△2.6m
구조	목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 본 공사는 2020년 세계유산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항임

구분	사업지침
당초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붕괴위험이 있는 윗세오름대피소 건물 철거 및 **개축**을 통하여 탐방객 안전을 확보한다.
변경 (신청)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붕괴위험이 있는 윗세오름대피소 건물 철거 및 **증축**을 통하여 탐방객 안전을 확보한다.

라. 검토의견 (******)

○ 신청사업은「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윗세오름대피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거 및 개축하고자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지원한 사항이며, 2020년 제4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5.27.)에서 부결되어 규모를 축소하고 디자인을 변경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해 자연유산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참고자료

(1) 기존 윗세오름대피소 46.8㎡

윗세오름 제2 대피소

외벽 구조체(목재) 부패 및 기초 박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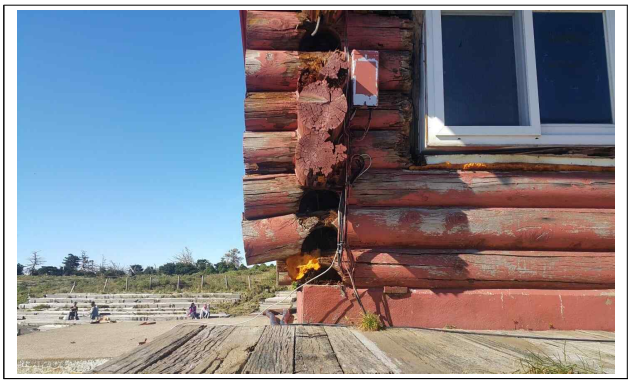

벽체 구조체(목재) 부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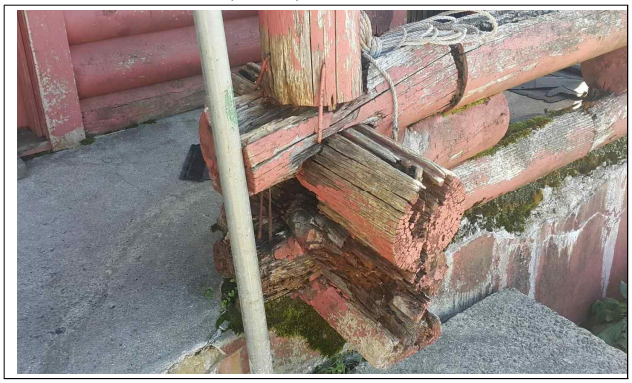

처마 기둥 구조체(목재) 부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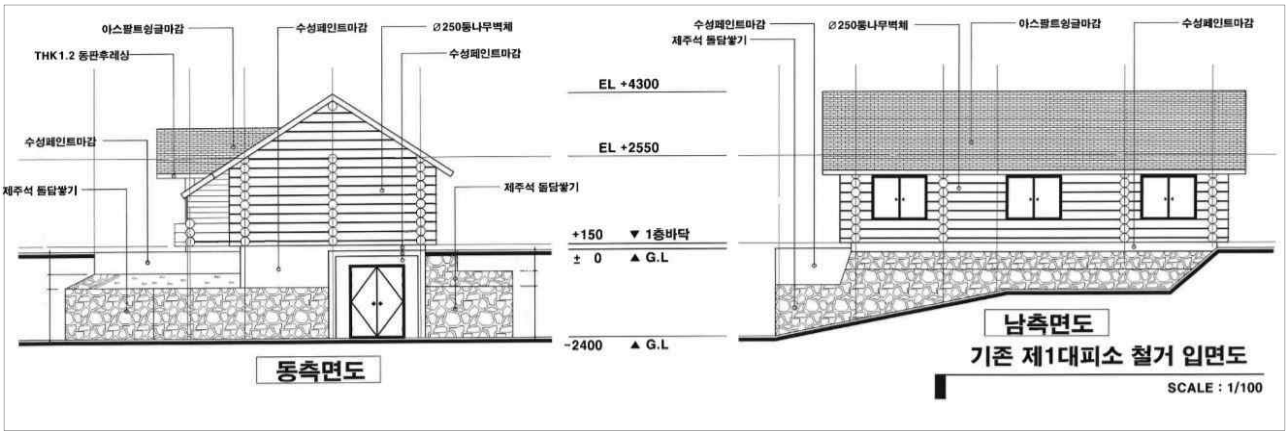

(2) 증축 윗세오름대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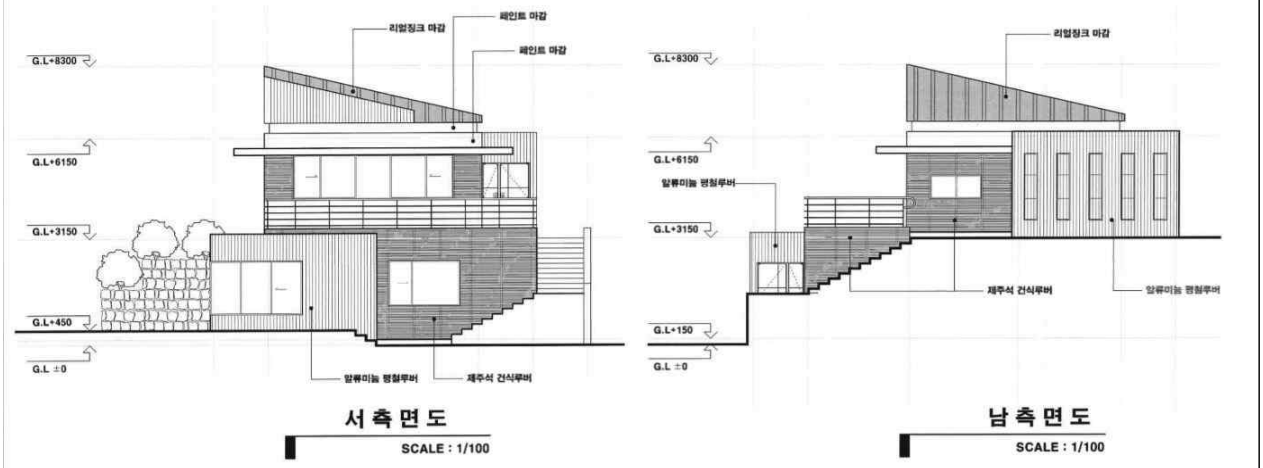

1차 신청 도면(지상1층, 지하1층 / 4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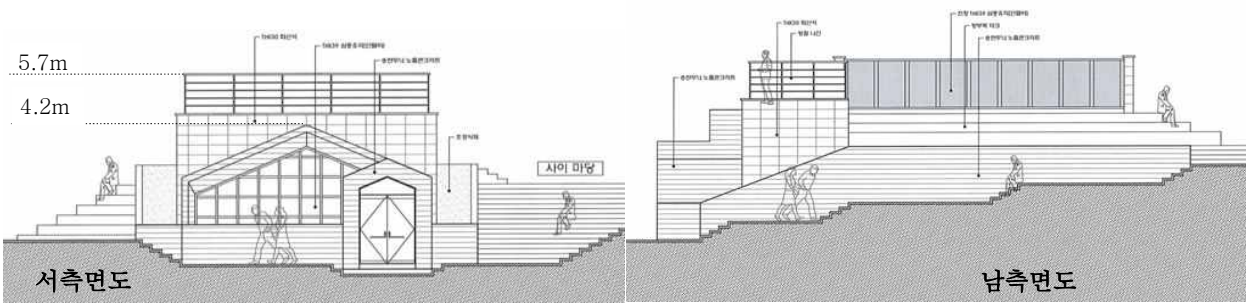

금회 신청 도면(21.6㎡)

1차 신청 조감도(지상1층, 지하1층 48.04㎡)

금회 신청 조감도(21.6㎡)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실시설계 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조건부 가결 11명

안건번호 천기 2020-07-05

5.「부산 오륙도」주변 관광활성화 사업(스카이워크)

가. 제안사항

명승 제24호「부산 오륙도」주변 관광활성화(스카이워크) 사업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부산 오륙도」주변 관광활성화(스카이워크) 사업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참고로 동 건은 2020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4.22.)에서 '명승의 경관 및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의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금번에 규모를 축소(25m→17.7m)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24호「부산 오륙도」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36

○ 지 정 일 : 2007.10.1.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스카이워크 관광활성화 사업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6-10 등 [1구역(개별심의) 등]

○ 사업내용

- 기존 스카이워크의 확장(9m→17.7m) *철거·재설치
- 관련조사 : 지질조사(2012년 신청 시 조사), 구조검토, 경관검토

※ 대상지 스카이워크 연혁

구분	1차 신청/부결 ('12.5.23.)	2차 신청/원안가결 ('12.6.27.)	3차 신청/부결 ('20.4.22.)	금회 신청 ('20.8.18.)	비고
스카이워크 길이	13m	9m	25m	**17.7m**	△7.3m
부대시설	파고라 등	-	음악분수· 미끄럼틀· 상징물 각1개	**상징물 1개**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1.12.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180m 이격 (1구역)

* 허용기준 : 개별심의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부산 오륙도」로부터 약 180m 이격된 1구역에 스카이워크 등 관광활성화 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유산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20.4.16.)

<* 문화재위원>**

○ 오륙도가 가지는 경관적 특성과 자연유산적 가치에는 이 지역에 형성된 해식애 등의 암석해안과 지질 및 지형적 특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 따라서 오륙도와 인접해 있는 해식애 지역에서의 인공구조물 확장은 오륙도와 암석해안이 가지는 지질 및 지형적 일체성을 훼손시킴은 물론, 오륙도 주변의 해안과 해역으로부터의 오륙도 조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문화재위원>**

○ 명승 제 24호 부산 오륙도의 각 섬들은 수직에 가까운 해안절벽과 파도의 침식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소규모의 파식대, 각양각색의 해식동 등 기이하고 다양한 해양지형과 오랜 세월동안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라온 동식물들, 그리고 짙푸른 바다가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여주고 있음.

○ 이에 오륙도와 인접해 있는 해식애 지역에서의 스카이워크 및 분수 등의 인공구조물 확장 및 신설은 오륙도와 암석해안이 가지는 지질 및 지형적 일체성을 훼손시킴은 물론, 오륙도 주변의 해안과 해역으로부터의 오륙도 조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명승 경관 및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부결 10명, 보류 1명

안건번호 천기 2020-07-06

6.「속리산 법주사 일원」내 자연학습장 건립

명승 제61호「속리산 법주사 일원」내 자연학습장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속리산 법주사 일원」내 자연학습장 건립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61호「속리산 법주사 일원」

○ 소 재 지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 지 정 일 : 2009.12.9.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자연학습장 건립

○ 사업위치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등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자연학습장 1동 건립

구분	내용
면적	대지면적 2,360㎡, **건축면적 430㎡, 연면적 800㎡**
높이	지상 2층, **최고높이 11m** (승강기탑 2m 포함)
구조·외장	철근콘크리트조, 점토벽돌·세라믹판넬
기타	주차 없음 (공용주차장이용), 지하구조물(승강기실 지하2m)

○ 사업기간 : 2020.9.1. ~ 2022.12.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명승 문화재구역 내 (세계유산구역 바깥)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속리산 법주사 일원」내에 국립공원 자연학습장 건물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유산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명승 경관 및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부결 11명

안건번호 천기 2020-07-07

7.「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 지 정 일 : 1966. 7. 23.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근린생활시설 신축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림동 708-4, 708-5번지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신축(2동)

· 규 모 : 1동(지상 1층), 건축면적(연면적) 184.3㎡, 높이 5.8m
1동(지상 2층), 건축면적 84.39㎡, 연면적 168.78㎡, 높이 8.8m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평스라브)

· 마 감 : 화강석 마감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1.8월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인접(1구역)

*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로부터 인접한 1구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유산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20.8.20.)

<* 문화재위원, *** 박사(낙동강관리본부)>**

○ 본 사업은 부산 강서구 죽림동 일원의 1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건임.

○ 본 사업은 문화재구역과 인접해 있고 신청지역 주변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1구역 내 다른 건축물은 없으며 본 신청건물이 신축될 경우 겨울철새의 서식 등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신청건물이 허가 될 경우 향후 1구역 내 유사 건물의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새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바. 참고자료

□ 사업예정지 위치도

사. 의결사항

○ 부결

- 철새 서식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부결 11명

안건번호 천기 2020-07-08

8. 포항 북송리 북천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468호「포항 북송리 북천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포항 북송리 북천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0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보존정책과-419호(2020.1.21.)]에 따른 허용기준 재조정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68호 포항 북송리 북천수(2006.3.28.지정)

-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복송리 477 외

(3) 신청내용 : 포항 북송리 북천수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천연기념물 제468호 포항 북송리 북천수

○ 제출안

<현 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	
2구역	○ 2층 이하 증·개축 허용(8m이하)	○ 12m이하
3구역	○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공통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축사 등은 영향성 검토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선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구역 기준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신청안>

<table>
<tr><td rowspan="2">구 분</td><td colspan="2">허 용 기 준</td><td rowspan="2">비고</td></tr>
<tr><td>평지붕</td><td>경사지붕(3:10이상)</td></tr>
<tr><td>1구역</td><td colspan="2">○ 개별심의</td><td></td></tr>
<tr><td>2구역</td><td>○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증·개축 허용)</td><td>○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td><td></td></tr>
<tr><td>3구역</td><td colspan="2">○ 포항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td><td></td></tr>
<tr><td>공통
사항</td><td colspan="3">○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 자연유산의 생태환경 및 향유주체의 탐방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참관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td></tr>
</table>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항은 포항 북송리 북천수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구역조정 없이 일부 불합리한 용어 등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현실여건 및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검토안 : 공통사항 적용범위 적용 및 불필요한 사항 제외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마.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 · *** 문화재위원, *** 前문화재위원 / 2020.8.7.>**

○ 현재의 허용기준은 개정된 기준요건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현시점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1구역 개별심의 및 2구역 평지붕 및 경사지붕에 대한 규정, 3구역 포항시 도시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등 신청한 안대로 현행 심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공통사항의 경우, 1구역은 개별심의 구역이며, 2, 3구역은 도시계획법률에 따른 법률에 적용되는 여러 사항을 반복적으로 나열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더할 필요는 없다고 판담됨. 따라서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의 허용, 경사지붕의 기준, 혼란의 여지가 있는 건축물 최고 높이 기준 등만을 제외하고 포항시 도시계획법률에 적용되는 사항은 제외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도시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문화재청과 반드시 협의 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이 지역은 길게 이어지는 숲의 경관적인 가치 등으로 향후 자연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토지

소유 등의 문제로 1구역 및 2구역의 설정이 문화재 보호에 완충적인 역할을 하기에 구획 구분이 불합리한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바,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발전 계획을 마련, 체계적으로 구역설정의 재조정, 보존과 활용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바. 참고자료

□ 포항 북송리 북천수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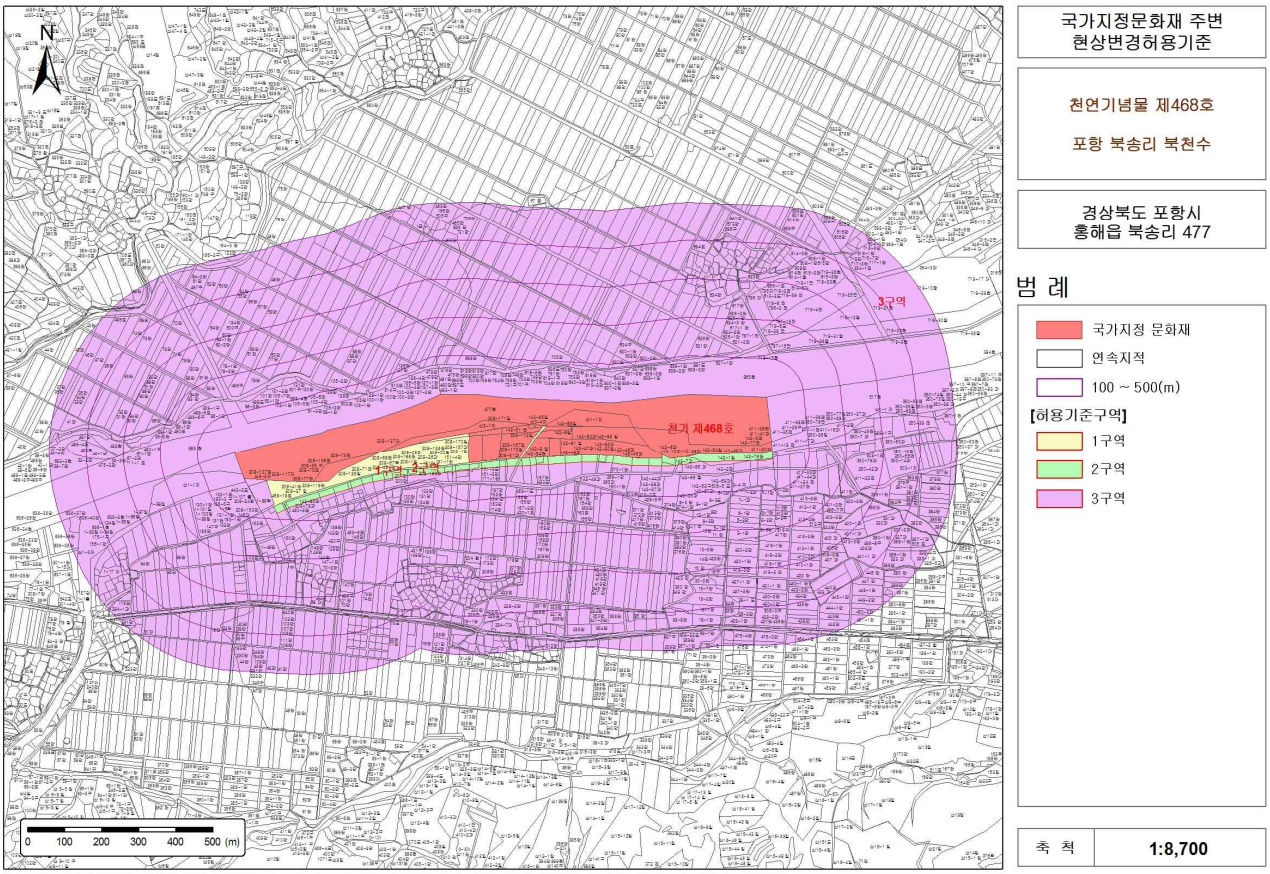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문화재청 조정안대로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조건부 가결 11명

안건번호 천기 2020-07-09

9.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한라산천연보호구역 등 2건)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유산지구 외) 등 천연기념물·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유산지구 외) 등 천연기념물·명승 2건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82호「한라산천연보호구역」등 2건

○ 천연기념물 제182호「한라산천연보호구역」(1966.10.12.지정)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명 승 제78호「제주 서귀포 쇠소깍」(2011.6.30.지정)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동 995 등

(3) 신청내용 : 천연기념물·명승 2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유산지구 외), 명승 제78호 제주 서귀포 쇠소깍 주변

○ 제출안

<현행>

구분	허용기준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구역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원지형 보존
2구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3구역	○평스라브 8m, 경사지붕 12m 이하	○농·임업에 한해 1,000㎡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기타 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 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4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사항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1~3구역은 개별심의, 4구역은 개별법 적용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시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신청안>

구 분	허용기준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하는 행위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평지붕 최고높이는 5m 이하, 경사지붕(10:3이상) 최고높이 7.5m 이하 단, 바닥면적 330㎡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심의	
3구역	○평지붕 8m ○경사지붕(10:3이상) 12m 이하	○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4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적용 ○생활하수 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1~3구역은 개별 심의, 4구역은 개별법 적용 ○1,2,3 구역 안에서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의 경우 완전 경사에 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지형도면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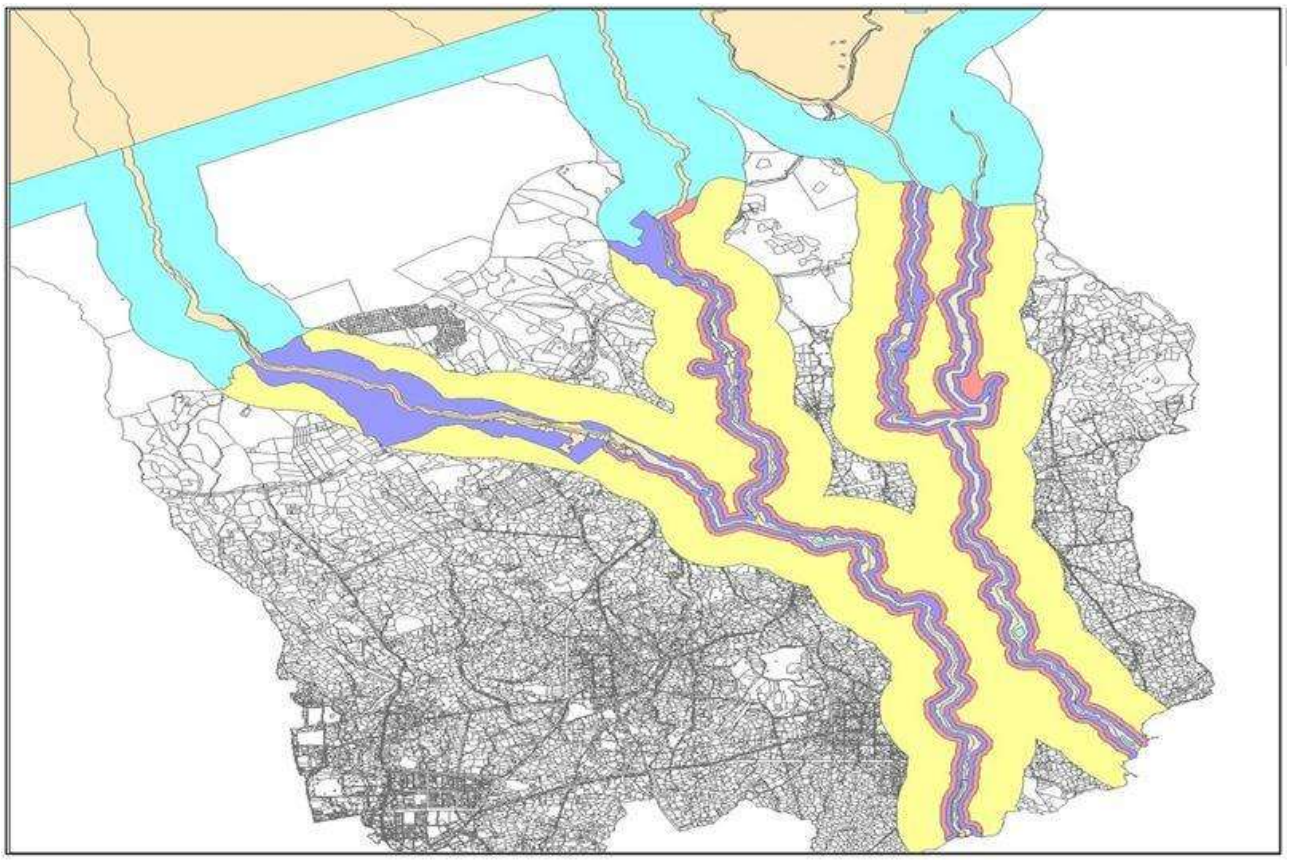

<신청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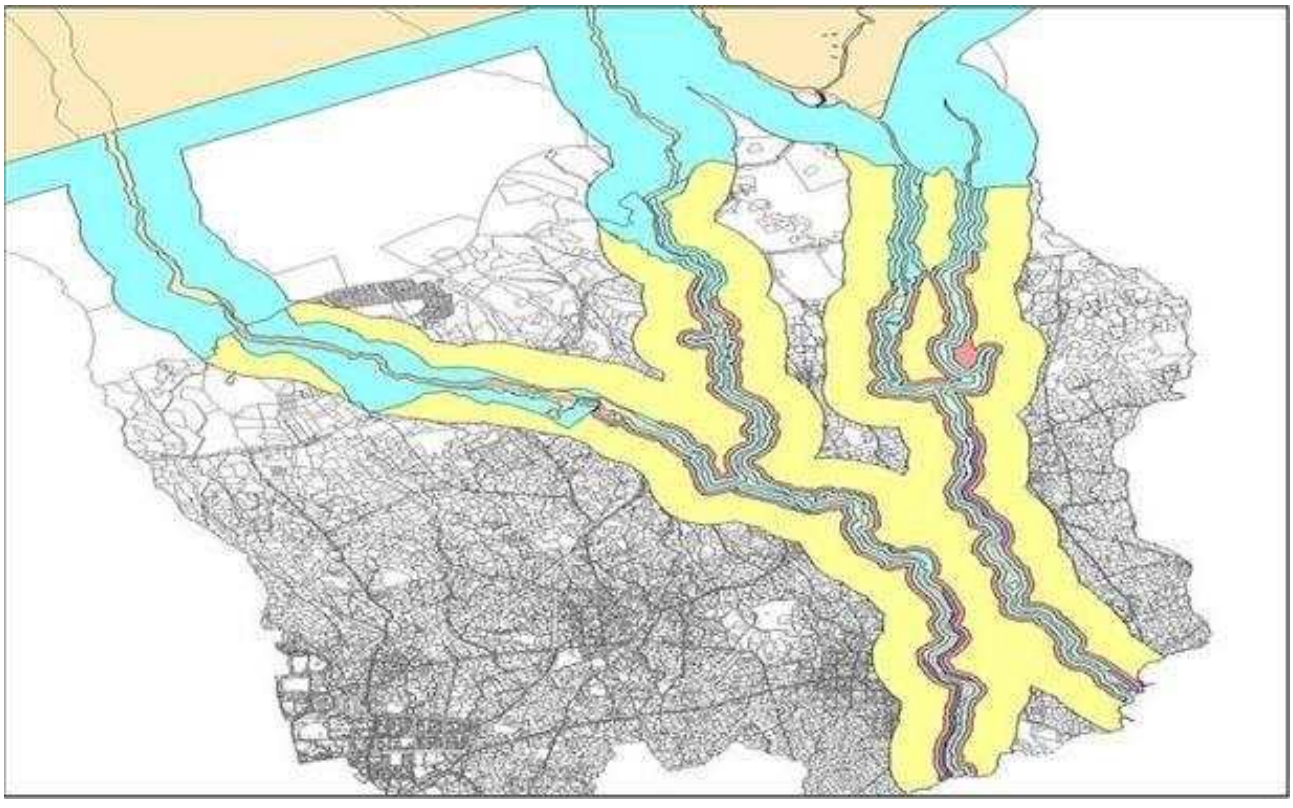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지류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현실여건 및 형평성에 맞게 재조정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구역조정은 타당하나 기준안 및 공통사항에 대한 문구는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검토안 : 공통사항 적용범위 적용 및 불필요한 사항 제외

구 분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최고높이는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단, 바닥면적 330㎡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심의	
3구역	○최고높이 8m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1구역부터 3구역에 적용> ○기존 건축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함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적용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개별 심의함 ○생활하수 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3구역에 적용> ○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 전용 허용함 <4구역에 적용>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마. 지자체(******) 의견(2020.7.6.)

○ 기 고시되어 운용중인 허용기준 내용 중 개발정도 고려 및 주변환경 변화, 지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조정한 사항으로 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문화재청 조정안대로 시행하되 2구역 개별심의 단서조항 추가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조건부 가결 11명

안건번호 천기 2020-07-10

10.「한라산천연보호구역」및「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주변 돈내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및「제주 상효동 한란자생지」주변 돈내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한라산천연보호구역」및「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주변 돈내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한라산천연보호구역」(1966.10.12.)
천연기념물 제432호「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2002.2.2.)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616번지 등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돈내코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신축공사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2279

○ 사업내용

구분	기존건물(철거)	신청건물	비고
대지면적	1,081㎡	1,081㎡	
건축면적	194.86㎡	253.68㎡	58.82㎡
건축연면적	196.66㎡	424.38㎡	227.72㎡
최고높이	5.2m(지상1층, 경사지붕)	8.6m(지상2층, 평지붕)	3.4m
기타공사		절토량 250㎥, 기존경계 돌담 및 석축 유지·보강, 신설돌담 L=21.72m, H1.2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1.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115m이격(2구역)

* 허용기준 2구역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라. 검토의견 (******)

○ 신청사업은「한라산천연보호구역」및「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에서 약115m 이격된 2구역에 돈내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유산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 2020.8.18.>**

○ 금번 신청건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및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 일원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물(높이 8.6m)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청 대지 일원은 문화재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신청사항으로 인해 문화재 경관을 관리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재·개축 범주를 벗어남.

<지자체(******) 의견 / 2020.8.19.>

○ 신청지는 현재 1층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시설이 존치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 철거한 후 2층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청대지는 경사지로 도로와 레벨차가 발생하고 계획지반선에서의 높이와 현지반선에서의 높이차이가 발생함. 신축건물 용도는 공공시설물(마을회관 및 노인복지시설)로 공익목적의 건축물 신축이며 허용기준 상 동일한 구역 내 2층 주택이 기 신축되어 있음

○ 건축물 용도 및 신축목적, 동일한 허용기준 구역 내 존치하고 있는 건축물 현황, 신청대지여건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관보호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규모의 현상변경허가 신청 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자체(****) 의견 / 2020.8.21.>

○ 신청 건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주변 2구역(지정구역과 약110m 이격됨) 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사항으로, 경사지 내 신축하는 점(최고높이 등)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임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바. 참고자료

□ 돈내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조감도

□ 돈내코 마을회관 및 경로당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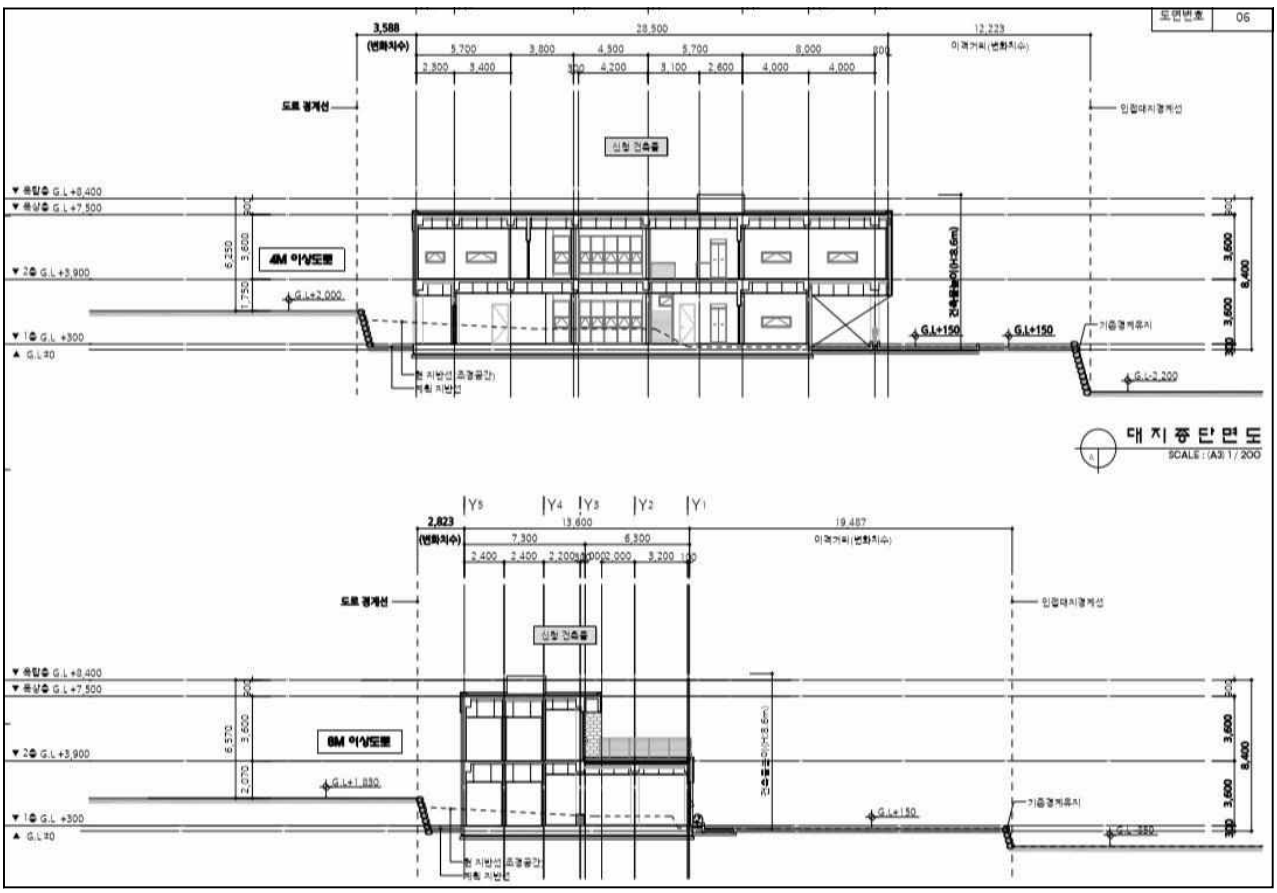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자연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부결 11명

안건번호 천기 2020-07-11

11.「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참고로 동 건은 2020년 제6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7.29.)에서 '자연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의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한라산천연보호구역」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지 정 일 : 1966.10.12.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창고 및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207-2

○ 사업내용

구 분	1차 신청/부결 (2020.7.29.)	금회신청 (2020.8.26.)	비고
건축(연)면적	192.11㎡ / 158.06㎡	192.11㎡ / 158.06㎡	
최고높이	7.9m(지상2층, 평지붕)	6.4m(지상2층, 평지붕)	△1.5m
조경면적	28.41㎡	31.92㎡	3.51㎡
기타	기존 시오수관 연결, 기존돌담 재사용, 진입로 절토량 17.2㎥	기존 시오수관 연결, 기존돌담 재사용, 진입로 절토량 17.2㎥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1.9.30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13m 이격(2구역)

* 허용기준 2구역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라. 검토의견 (******)

○ 신청사업은「한라산천연보호구역」에서 약13m 이격된 2구역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2020년 제6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7.29.)에서 부결되어 최고높이를 낮춰 신청하였으나, 자연유산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서면검토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 2020.8.18.>**

○ 금번 신청건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에 연접한 지역(문화재구역으로부터 13m 이격)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단독주택(높이 6.4m)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례천의 천연보호구역 장소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현상변경 허용기준(2구역)에서의 재·개축 범주를 벗어남.

<지자체(******) 의견(2020.8.19.)>

○ 1차 신청당시 최고높이 7.9m에서 6.4m로 건축물 높이를 낮춰 신청한 사항이나, 신청지 주변에 신청높이의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 도로와 바로 인접한 건축물은 남·북 반경 100m 이내에 오래된 창고 및 주택 1개소가 위치하나 모두 5m미만(1층)임.

○ 신청지 내 건축물 배치는 문화재구역과의 이격거리가 채 13m 내외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관보호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규모의 현상변경허가 신청 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1차 부결시(2020.7.29.) 관계전문가 서면검토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 2020.7.23.>**

○ 금번 신청건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에 연접한 지역(문화재구역으로부터 13m 이격)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단독주택(높이 7.9m)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례천의 천연보호구역 장소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현상변경 허용기준(2구역)에서의 재·개축 범주를 벗어남.

<지자체(******) 의견(2020.7.22.)>

○ 신청지 주변에 신청내용 규모의 높이(7.9m)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도로와 바로 인접한 건축물은 남북 반경 100m 이내에 오래된 창고 및 주택 1개소가 위치하나 높이 5m미만(1층) 건물임.

○ 신청지 내 건축물 배치는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13m 이격되어 있어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관 보호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규모의 현상변경 허가신청 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바.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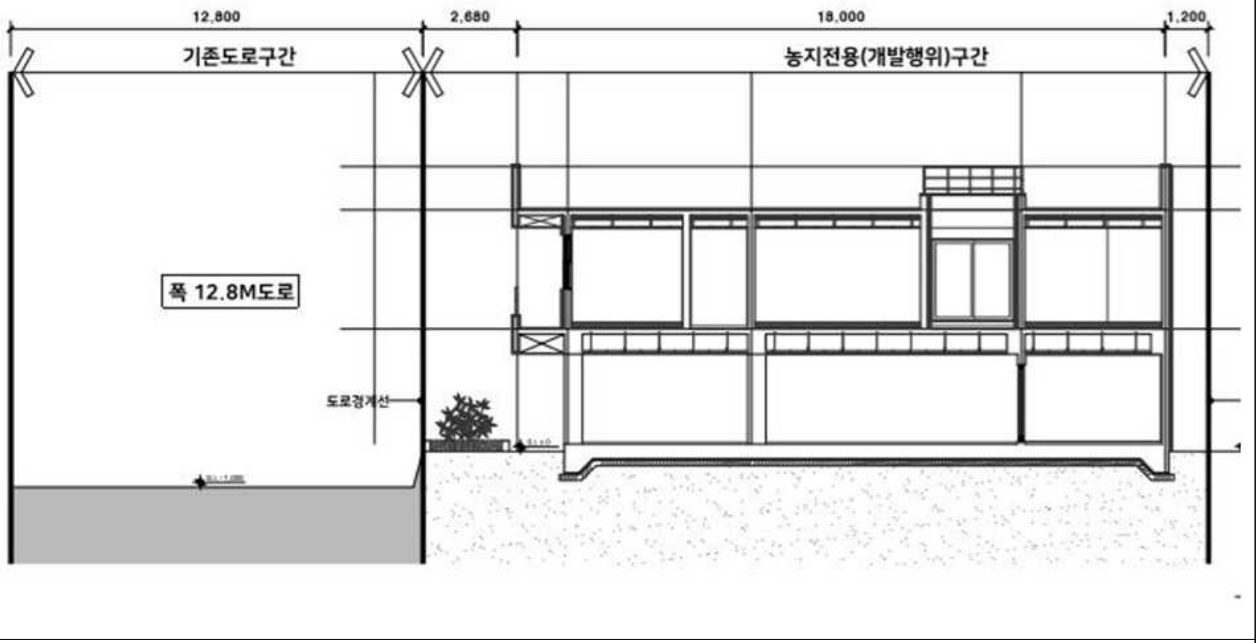

1차 신청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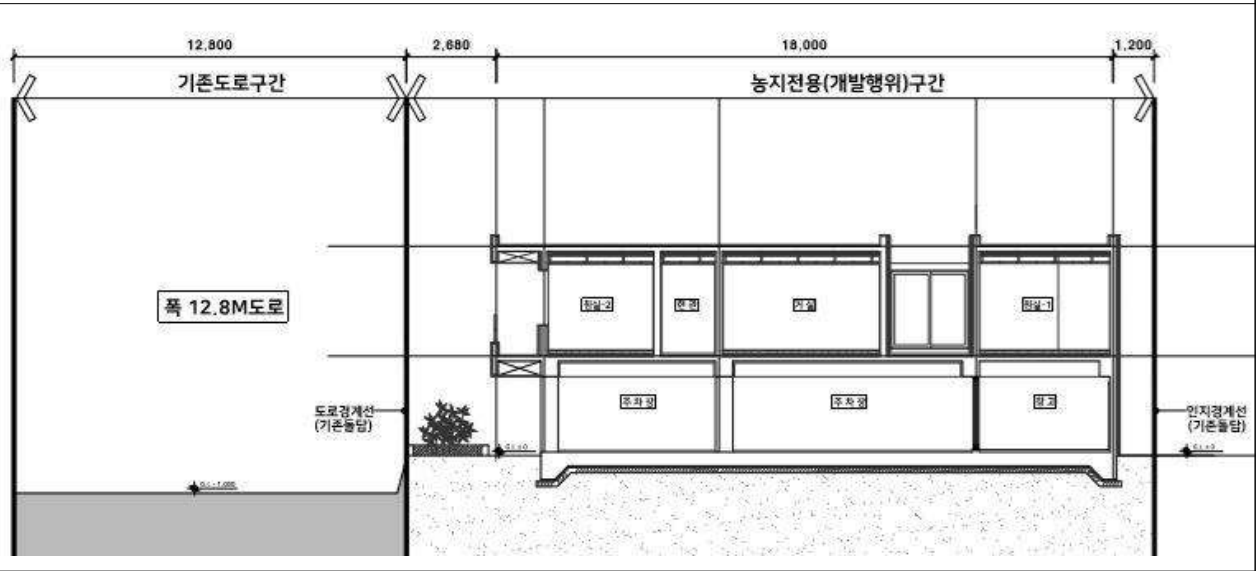

금회 신청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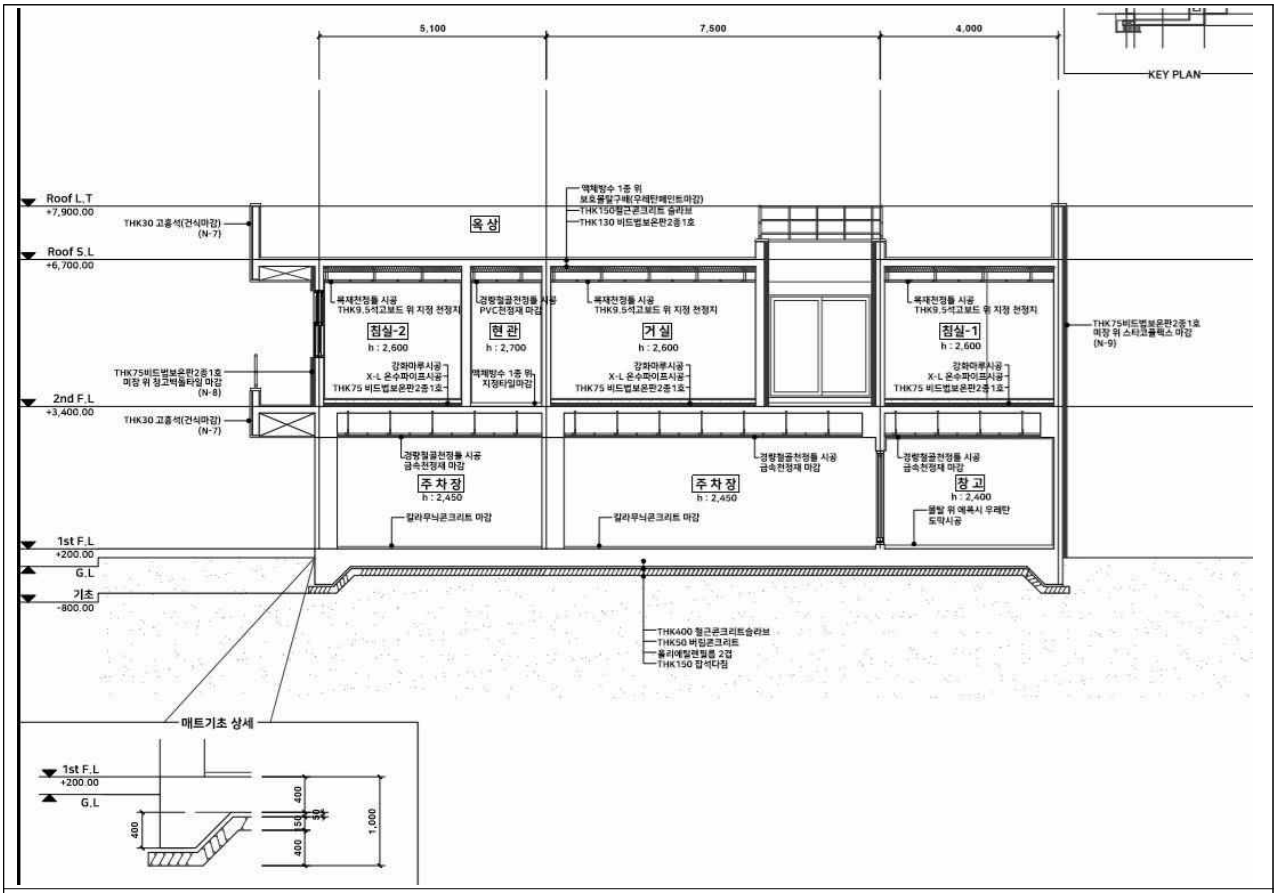

1차 신청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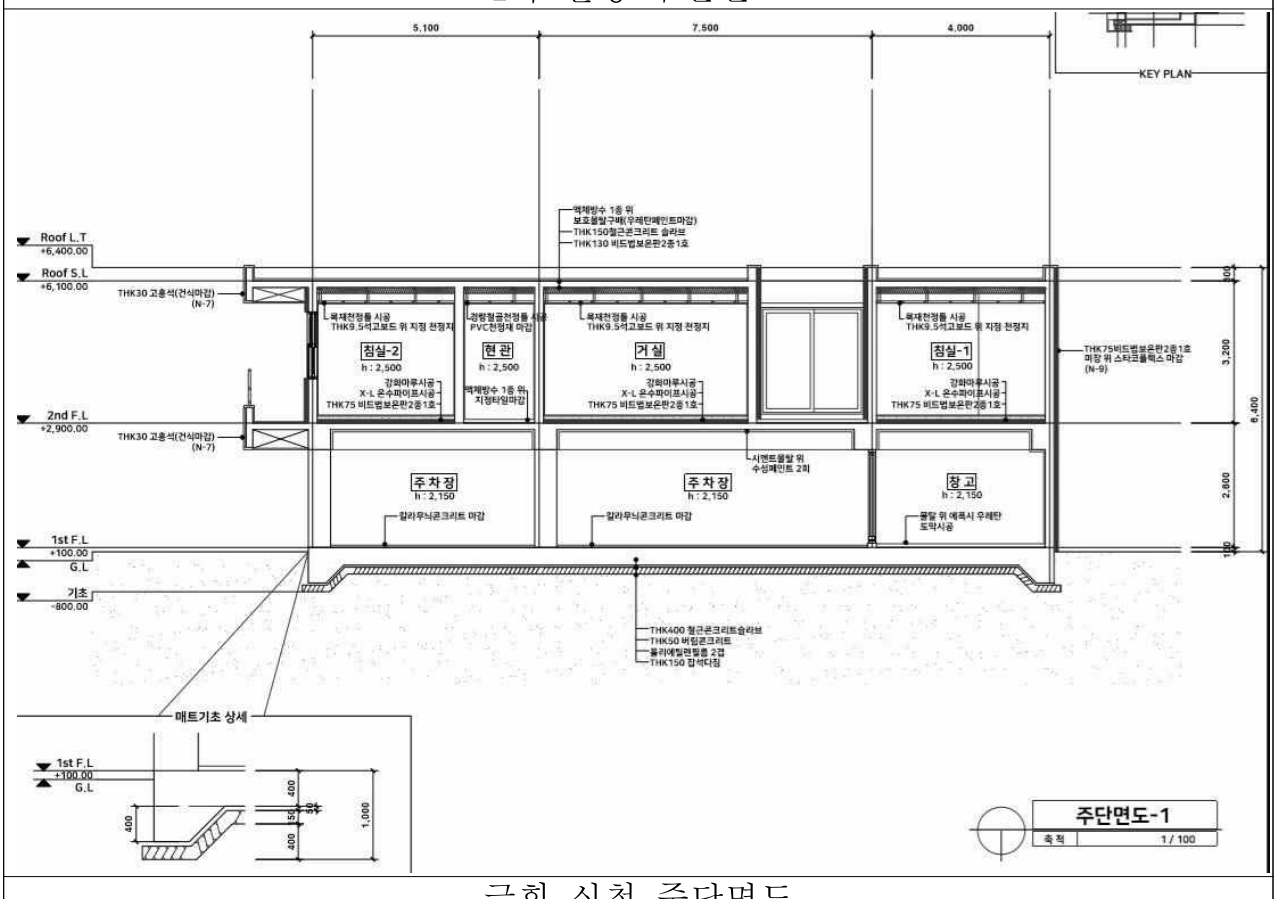

금회 신청 주단면도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자연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부결 11명

【검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20-07-12

12.「담양 태목리 대나무군락」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담양 태목리 대나무군락」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담양 태목리 대나무군락」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을 검토하는 사항임

○ 추진경과

- '04. 6.24. 환경부 영산강 상류 담양 하천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협의
- '04. 7. 8. '담양 하천습지' 습지보호지역 고시(***)
- '05. 7. 6. 천연기념물 지정신청(****→****)
- '05.11.25.~27 천연기념물 지정 현지조사

***, *** 문화재위원, *** 전라남도문화재위원

· *** 문화재위원 : 산업과 기후특성을 상징하는 표징적 의미가 있고, 퇴적지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군락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큼

· *** 문화재위원 : 담양 하천습지와 함께 형성되어 자연성을 잘 보존되고 있는 우량한 대나무 군락이며, 지역 문화적 상징성을 잘 나타냄

· *** 전남문화재위원 : 제방 내 존재하는 대나무 군락으로 일반적인 담양의 구릉지, 경락지에서 볼 수 없는 환경임

- '05.12.21. 제13차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 지정검토(검토결과 : 지정추진)
- '06. 2. 2.~ 3. 4.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 ********* : 대나무군락으로 인해 홍수 시 수위상승을 유발하므로 주기적인 하천정비가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할 것

· ***(*****) : 한강하구 습지 보호지역(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와 중첩) 지정 동의 조건으로 동의함

· *** : '담양 하천습지보전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개발협조 요청 시 승인 조건으로 동의함

- '06. 3.22. 제3차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 지정심의(심의결과 : 보류)

· *** : 습지보전법에 의한 행정행위 보장, 습지보호지역 내 대나무 군락지의 문화적 가치, 안내판 설치, 천연기념물 보호에 필요한 조치 등 제반활동은 관할 유역환경청과 사전협의 하여 시행할 것('16.4.7.)

- '19. 2.13. 2019년 천연기념물(식물)지정 확대를 위한 관계전문가 검토회의 시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추가 조사 요청(********)
- '20. 3. 9. 2020년 천연기념물(식물)지정 확대 추진계획 수립(****)
- '20.6.26. 천연기념물 지정 현지조사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신청내용

○ 지정명칭 :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潭陽 台木里 대나무 群落)
영 문 Population of Bamboos in Taemok-ri, Damyang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군락)

○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656-2 등(N35°15′03″, E126°53′51″)

○ 지정가치

- 일반적인 대나무 서식조건과 달리 자연 하천변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군락으로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하여 생태적 환경적 연구 및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임. 또한 우리민족이 옛날부터 식용 또는 생활도구로 이용해온 전통 유용식물자원임. 그리고 현재까지 대나무 군락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지정할 가치가 있음

○ 지정구역 : 94필지(110,858㎡)

○ 관리단체 : 담양군(담양군수)

○ 주요현황

- 수 종 : 대나무(분죽, 왕대)
- 대나무 종류 : 분죽, 왕대

· 분죽(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Bean) Stapf)

· 왕대(Phyllostachys bambusoides Sieb. et Zucc.)

- 규 모 : 평균높이 18m, 평균지름 2~12㎝

라. 검토의견 (******)

○ 담양이 죽세공 문화와 전통적인 관련이 깊고, 하천변에 자연스럽게 군락지를 이루고 있어 야생 동식물의 주요 서식지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재까지 동종의 식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마. 국가지정문화**

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 前문화재위원 / 2020.6.26.)

(1)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종별 : 천연기념물

○ 명칭(안) :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2) 문화재 현황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영상강 상류의 금성천과 증암천이 합쳐지는 곳에 넓게 펼쳐진 충적토 평야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강변에 비교적 높게 조성된 둔치에 대나무가 밀생됨
- 이곳은 대나무뿐 만 아니라 습지식물도 많아서 습지보존지구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곳이기도 함
- 「세종실록지리지」에 담양의 공물로 가는대・왕대・오죽・화살대 등이 기록되어 있음.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부채류와 대바구니가 공물로 진상되었으며,『부역실총賦役實摠』에 담양은 죽력竹瀝・죽전竹箭・채상彩箱・진소眞梳가 공물로 생산됨.『규합총서閨閤叢書』에 명산품으로 담양의 채죽상자와 세대삿갓이 소개되었음
- 담양지역의 죽세공예품은 생활도구로 조선시대부터 정착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전주에서 이 곳 향교리에 이사 온 김씨 노부부가 농한기를 이용하여 참빗을 만들었다는 추성지(秋成誌)의 기록과 전통있는 대나무 물레나 바늘상자 등이 뒷받침해 주고 있음

* 대나무 관련 문화재 현황(담양지역)

구 분	지 정 종 목
국가지정	채상장(彩箱匠) /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1975. 1)
시도지정	참빗장 / 시도무형문화재 제15호(1986.11.) 담양죽렴장(潭陽竹簾匠) / 시도무형문화재 제23호(1990.2.) 낙죽장(烙竹匠) / 시도무형문화재 제44호(2009.3.) 접선장(扇子匠) / 시도무형문화재 제48호(2010.5.) 담양 선자장(摺扇匠) / 시도무형문화재 제48-1호(2010.5.)

○ 연혁·유래 및 특징

- 담양은 예로부터 '대나무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고, 현재도 전국 죽림 면적의 약34%를 차지할 만큼 어느 곳이든지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고장임
- 1909년 '공업전습소' 설치, 1915년 참빗제조업자들의 '진소계眞梳契'가 조직되었으며, 진소계는 1920년 12월 '담양산업조합'이란 이름으로 바뀜. 일제 강점기에 발간된『전라남도개람全羅南道槪覽』에 담양은 1910년 전후로 죽세품 총생산량이

117,536원에 달하던 것이 1924년에는 연간 생산액만 4,200만원에 달하였다고 적고 있음

- 1945년 이후 담양의 대나무는 '생금밭'으로 불리울 정도로 농가에 경제적 도움을 주었으며, 농가가 생산한 죽제품은 미국을 비롯 5개국에 수출한 바 있고, 1966년 관 주도의 '죽세공예센터'가 건립될 정도로 번성하였으나, 1970년 후반 화학재료 제품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담양 죽세공예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게 됨.

죽세공예센터 작업모습(70.12.31)

죽물시장(70.11.24)

- 영산강의 상류 강의리부터 연결된 태목리 대나무밭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던 것이 영산강 홍수방지와 유속감소를 위해 인위적으로 대나무를 식재하면서 현재의 면적을 유지한 것으로 보임
- 현재의 제방 축조는 영산강 하천 범람과 홍수 방지를 위해 1958년부터 연차적으로 축조하기 시작하여 1967~1969(2차), 1971~1975(3차)에 걸쳐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
- 2010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대나무 군락지 대규모 간벌이 이루어졌으며, 하천습지 입구에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고 영산강 8경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음
- 인근 영산강변의 담양하천습지와 더불어 생태자연환경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며, 환경부「습지보전법」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2004.7.8.지정)

※ 천연기념물·명승과 습지보호지역 중복지정현황

문화재명	습지보호지역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66.7.23.)	낙동강하구('99.8.9.)
대암산대우산천연보호구역('73.7.10.)	대암산용늪('99.8.9.) / 람사르습지 등록('97.3.28.)
창녕 우포늪천연보호구역('11.1.13.)	우포늪('99.8.9.) / 람사르습지 등록('98.3.2.)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75.2.21.)	한강하구('06.4.17.)
제주 물장오리 오름('10.10.28.)	제주 물장오리 오름('09.10.1.)/ 람사르습지 등록('08.10.13.)
영월 한반도 지형('11.6.10.)	영월 한반도습지('12.1.13.) / 람사르습지 등록('15.5.13.)

- 2019년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양하천습지 내 천연기념물

수달과 기타 멸종위기야생생물이 관찰되고 있음

- 담양하천습지 지정 당시에 자연형 하천유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동식물이 분포하고 있었으나, 하천습지주변 제방 일원으로 도로 및 여가활동에 의한 인위적 간섭으로 생태계교란 식물 등이 발견됨

※ 2019년 제3차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담양하천습지) -「국립생태원」

구 분	주요 발견 개체
식 생	왕버들군락, 선버들군락 달뿌리풀군락, 물억새군락, 줄군락, 왕대군락 등
조 류	황조롱이, 원앙, 새호리기, 흰목물떼새 등
어 류	돌마자, 참몰개, 눈동자개, 피라미, 붕어 등
양서·파충류	무당개구리, 청개구리, 자라, 유혈목이, 능구렁이, 살모사 등

- 담양 대나무밭은 2014년 국가중요농업유산, 2020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음

※ 대나무 군락지 비교(담양군)

연번	소 재 지	면 적(㎡)			소 유	비고
		계	대나무	그 외		
1	담양읍 삼다리 산47외 7필지*	188,285	155,046	31,586	산림청	농업유산
2	담양읍 삼다리 산44외 56필지*	148,063	138,269	9,589	사 유	농업유산
3	대전면 태목리 656-2외 93필지	110,898	110,898	-	국유, 사유	담양습지
4	담양읍 향교리 산44외 35필지	91,300	91,300	-	담양군/사유	죽녹원
5	담양읍 만성리 산1외 5필지	27,995	27,995	-	담양군	

* **담양읍 삼다리** : 2014년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후 <대나무숲길> 조성을 시작으로 <소나무숲길>, <편백숲길>, <삼나무숲길>, <둘레길> 등 산책길과 팔각정자, 명상쉼터, 의자 등 편의시설을 갖춘 <시루산 산림욕장>을 개장. 대나무 숲 아래에 자생 차나무(죽로차)를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차나무를 식재하면서 차나무 면적을 넓혀가고 있으며, 구절초 단지 등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

<table>
<tr><td> </td><td> </td></tr>
<tr><td>삼다리 대나무 숲 전경</td><td>삼다리 대나무 숲 전경</td></tr>
<tr><td> </td><td> </td></tr>
<tr><td>삼다리 대나무 숲길</td><td>삼다리 대나무 숲 차나무(죽로차)</td></tr>
</table>

(3)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 하천변에 자연스럽게 생육하고 있고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공간이며,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민속적, 생태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담양의 죽세공예품 등 전통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된 고유의 식물로 지속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음

- 근거기준 : 천연기념물 〈식물〉

아.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에 관련된 유용식물 또는 생육지

(4) 지정 대상 및 범위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656-2 등 94필지, 110,858㎡

(5) 보호관리사항 검토

○ 마을주민들이 간혹 이용하는 차로가 숲을 관통하여 양분하고 있으므로 대나무 숲을 보전과 동시에 문화재 가치를 살려 알리기 위해서는 기존 도로를 관람 동선으로 전환하는 등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이 도로변에 식재되어 장치된 가로수들이 대나무들과 일부 경쟁적인 관계에 있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음

○ 기존 습지보전지역 구역설정에 따라 데크길이 일부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나 지정 구역 전체를 보고 동선재확정이 필요함

○ 식재되었던 대나무숲이 이용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최고의 대나무숲 경관을 느끼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숲 내 대나무 관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 단 나무와 함께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의 종합적 생태 파악이 필요함

(6) 전문가 종합의견

<* 문화재위원>**

○ 태목리 대나무 숲은 하천변 농지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호안방재용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대나무 숲의 면적은 둔치를 따라 길이 방향으로 확대되어 죽세품의 생산이 활발했던 시기에는 대나무 생산에 기여하였을 것임

○ 담양은 우리나라에서 대나무밭과 죽세품으로 손꼽히는 고장으로서 태목리 대나무 숲은 왕대와 솜대가 섞여 자라며 하천변에 존재하는 대나무 숲으로써 규모가 크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어서 담양의 많은 죽세품 관련 무형문화재와 연계되어 역사적·문화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크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위원>**

○ 담양이 대나무 문화와 전통적인 관련이 깊다는 점, 아직까지 대나무 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는 점,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 역할을 함께 하는 점에서 문화재 지정을 고려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특징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자료의 구비가 필요함. 따라서 지역에 대한 역사기록에 대한 발굴, 정확한 면적과 지역 내 다른 숲과의 비교조사, 보전대상 동식물현황, 숲 내 문화재적 가치를 저해하는 이질적인 요소들에 대한 방안 등이 함께 고려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前문화재위원>**

○ 전통 유용식물의 대표적인 아이콘인 담양의 대숲은 오늘날 값싼 공산품의 대량생산으로 인해 가내수공업으로 생산되던 죽제품이 사라짐에 따라 그 재료인 대나무가 자라던 대밭도 줄어들고 있음

○ 담양 태목리의 대나무 군락은 담양의 전통문화경관을 상징하는 아이콘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인 자연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음

(7) 지자체(***) 의견(2020.3.4.)

○ 담양군은 천연기념물 지정에 동의하며, 지정 심의 시 다음사항 고려

- 대나무 군락 관리시 매년 반복되는 간벌, 장마 또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집중호우시 피해가 예상되는 대나무 군락 내 쓰러진 대나무 벌채 등 일련의 관리행위에 대해 관리단체(담양군)의 판단 하에 우선 실시하고 추후 신고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지역주민(태목리 태암마을) 천연기념물 지정 이의제기 없음

바. 참고사항

□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 면적 조서 : 94필지, 110,858㎡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합계				57,474	합계				53,384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19-1	천	국토교통부	4,182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27-5	천	국토교통부	1,421
	19-2	천	국토교통부	955		27-6	천	국토교통부	724
	19-3	천	국토교통부	628		28-1	전	국토교통부	1,531
	19-4	천	국토교통부	1,940		28-2	천	국토교통부	99
	19-5	천	국토교통부	896		28-3	천	국토교통부	608
	19-6	천	국토교통부	1,117		28-4	제	국토교통부	311
	19-7	천	국토교통부	638		28-5	제	국토교통부	278
	19-8	천	국토교통부	1,140		28-6	제	국토교통부	126
	19-9	천	국토교통부	1,190		28-8	전	국토교통부	112
	19-10	천	국토교통부	1,263		28-9	전	국토교통부	136
	19-13	천	국토교통부	1,940		29-2	제	국토교통부	2,023
	19-14	천	국토교통부	1,084		29-3	제	국토교통부	774
	19-15	천	국토교통부	1,283		29-4	제	국토교통부	711
	19-16	천	국토교통부	737		29-5	제	국토교통부	291
	19-17	천	국토교통부	678		103-1	제	국토교통부	1,306
	19-18	천	국토교통부	1,035		103-2	전	국토교통부	7
	19-19	천	국토교통부	1,160		108-3	제	국토교통부	747
	19-20	천	국토교통부	1,246		108-8	전	국토교통부	1,055
	19-21	천	국토교통부	618		108-9	제	국토교통부	235
	19-22	천	국토교통부	1,038		108-10	제	국토교통부	311
	19-23	천	국토교통부	615		108-11	제	국토교통부	298
	19-24	천	문해준	483		108-12	제	국토교통부	625
	19-25	천	국토교통부	2,089		108-13	제	국토교통부	446
	19-26	천	국토교통부	1,706		108-14	천	국토교통부	301
	19-27	천	국토교통부	959		656-1	제	국토교통부	863
	19-28	천	국토교통부	800		656-2	제	국토교통부	512
	19-34	제	국토교통부	202		656-3	제	국토교통부	387
	19-35	천	국토교통부	10		656-4	제	국토교통부	152
	19-36	제	국토교통부	46		656-5	천	국토교통부	20
	19-37	제	국토교통부	23		656-6	천	국토교통부	195
	19-38	제	국토교통부	20		656-7	천	국토교통부	294
	19-39	제	국토교통부	10		657-1	천	국토교통부	2,486
	23-1	천	국토교통부	1,607		657-2	천	국토교통부	873
	23-2	천	국토교통부	1,243		657-3	천	국토교통부	850

	23-3	천	국토교통부	1,293		657-4	천	국토교통부	129
	23-4	전	국토교통부	1,342		657-5	천	국토교통부	883
	23-5	천	국토교통부	803		657-6	천	국토교통부	1,560
	23-6	천	국토교통부	668		657-7	천	국토교통부	949
	24	천	국토교통부	2,083		657-8	제	국토교통부	17
	25-1	천	국토교통부	5,385		658-1	천	국토교통부	2,182
	25-2	천	국토교통부	1,131		658-2	천	국토교통부	2,288
	25-3	제	국토교통부	132		658-3	천	국토교통부	5,157
	26	천	국토교통부	7,263		659-1	천	국토교통부	1,131
	27-1	천	국토교통부	879		659-2	잡	국토교통부	1,666
	27-2	천	국토교통부	575		659-3	잡	국토교통부	793
	27-3	천	국토교통부	638		659-4	잡	국토교통부	6,612
	27-4	천	국토교통부	701		659-5	잡	국토교통부	8,909

□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내외 습지현황(담양하천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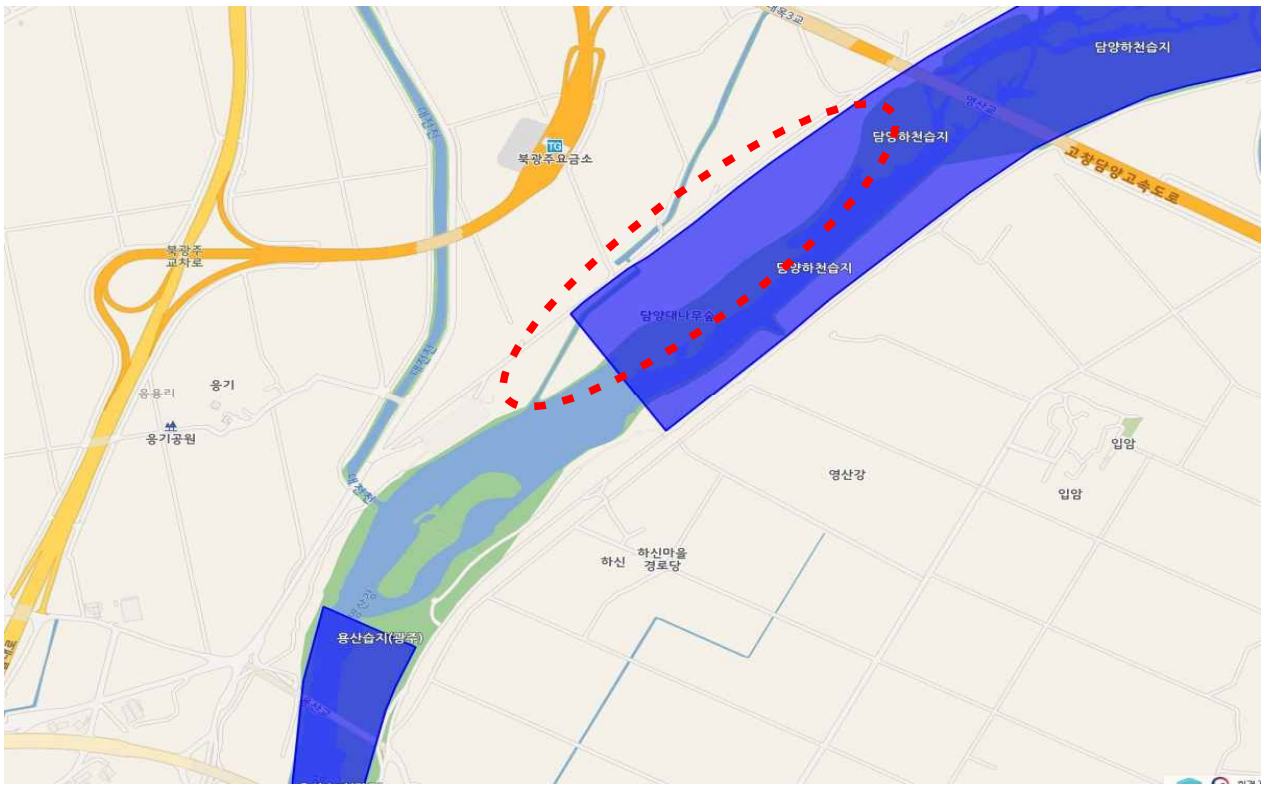

□ 담양군 제출 지정추진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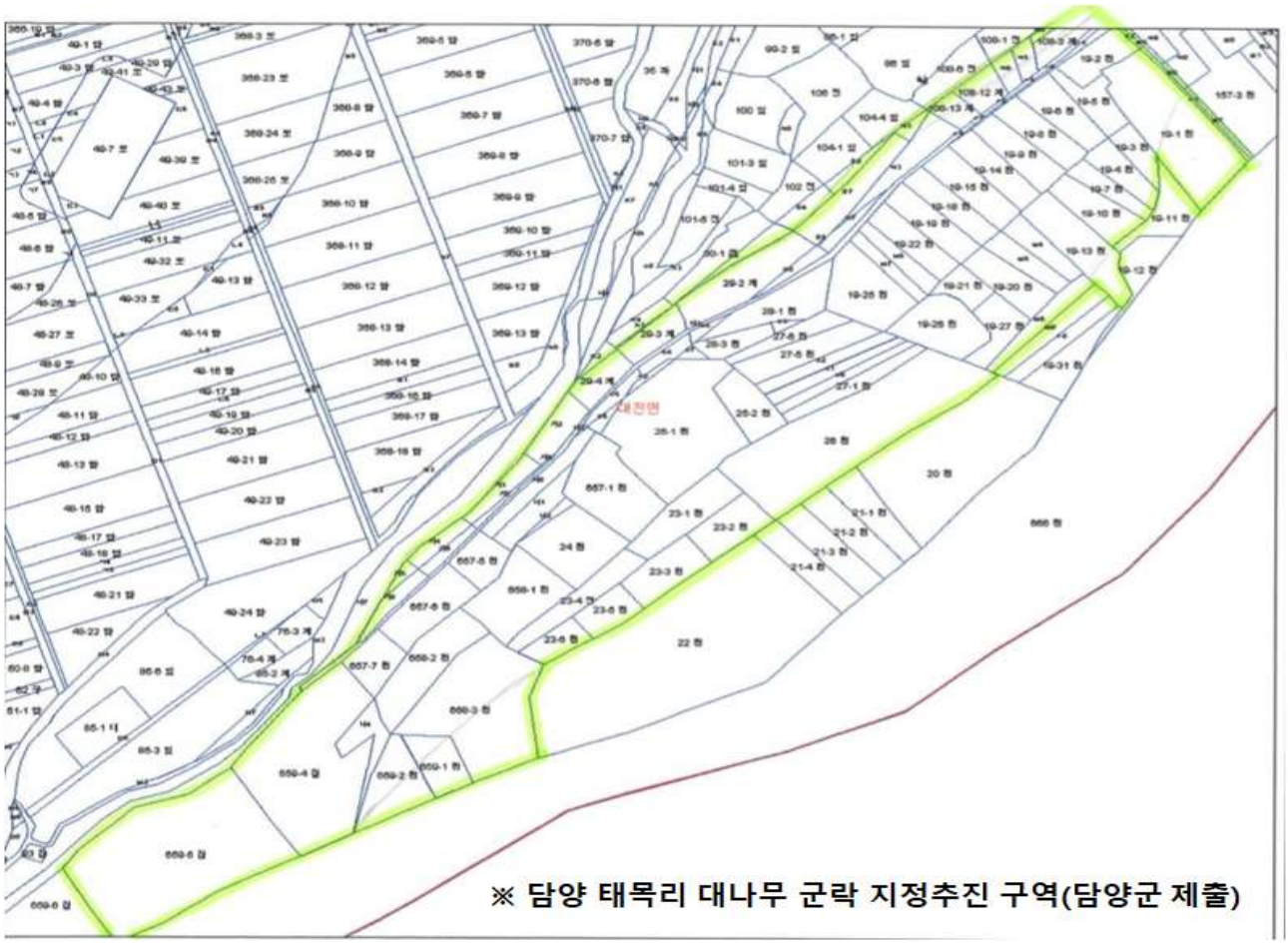

※ 도·광역시별 대나무 주요 죽종별 분포면적

구분	죽종혼효	솜대	왕대	맹종죽	계
계	10,084	5,925	5,779	280	22,067
전라남도	5,039	1,170	1,876	34	8,119
경상남도	2,649	2,423	1,822	226	7,121
경상북도	801	973	209	-	1,983
전라북도	766	540	472	-	1,778
충청남도	322	193	1,132	-	1,647
울산광역시	203	141	42	11	397
강원도	52	285	-	-	337
광주광역시	-	79	95	-	174
충청북도	61	50	33	-	144
부산광역시	78	-	50	9	137
대구광역시	49	36	18	-	103
제주특별자치도	43	25	18	-	86
세종특별자치시	8	3	5	-	16
인천광역시	9	2	2	-	13
대전광역시	-	5	4	-	9
경기도	3	-	4	-	3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7명, 조건부 가결 4명

안건번호 천기 2020-07-13

13.「장성 단전리 느티나무」문화재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478호「장성 단전리 느티나무」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통해 보호구역을 조정(확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경 과

- '18.12.11.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보호구역 추가지정 고시(5필지 2,418㎡)
  · (기존) 1필지 188㎡ → (변경) 6필지 2,606㎡
- '20. 1. 6. 2020년도 천연기념물·명승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추진계획 수립
- '20. 7.21.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보호구역 적정성 기초자료 제출(**** → ****)
- '20. 7.27.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문화재전문위원 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78호「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91 외 5필지

○ 지 정 일 : 2007.8.9.

(3) 신청내용 : 1필지 896㎡

(단위 : ㎡)

소재지	기 보호구역 지정면적			보호구역 확대지정 신청면적			확대지정 후 보호구역 면적		
	필지	지적(㎡)	지정면적(㎡)	필지	지적(㎡)	지정면적(㎡)	필지	지적(㎡)	지정면적(㎡)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6	2,606	2,606	1	896	896	7	3,502	3,502

(4) 확대지정 사유

○ 자연문화재의 온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관리하고자 함

라. 검토의견 (******)

○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보호구역 주변 경작행위로 농약 피해가 우려되는 등 문화재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관계전문가 서면검토 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 2020.7.27.)**

○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주변 1필지(896㎡)에 대하여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을 신청한 건으로, 느티나무의 뿌리생육 공간 확보 등을 위해 보호구역 추가지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바.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 면적조서

지정 번호 및 문화재명	소재지	지번/지목	지적 면적	지정 면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비고
제478호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전남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84-8 답	896㎡	896㎡	울산 동구 옥류로 92 벽산유토피아 101-1108	***	
계(보호구역)		1필지	896㎡	896㎡			

사. 참고자료

□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문화재보호구역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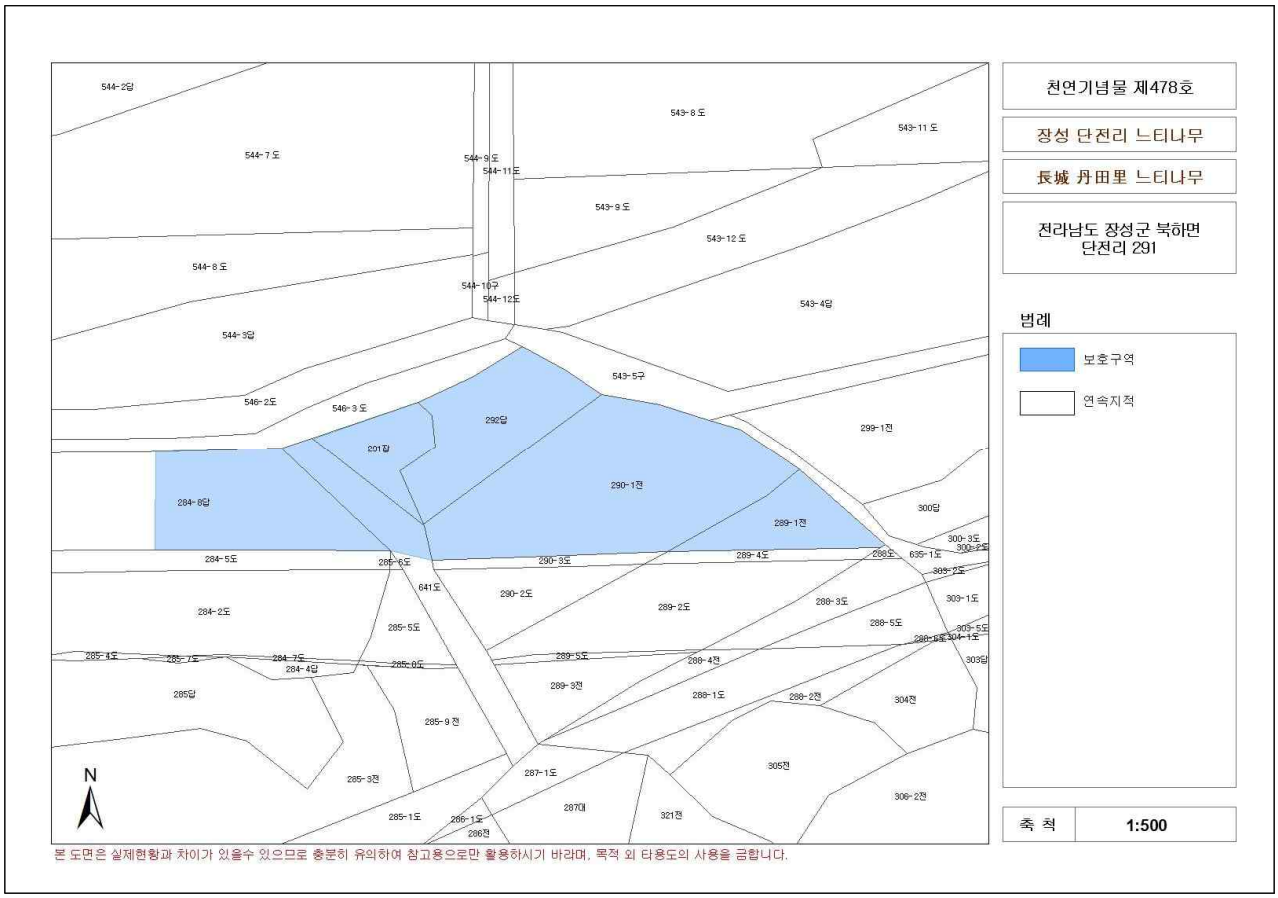

□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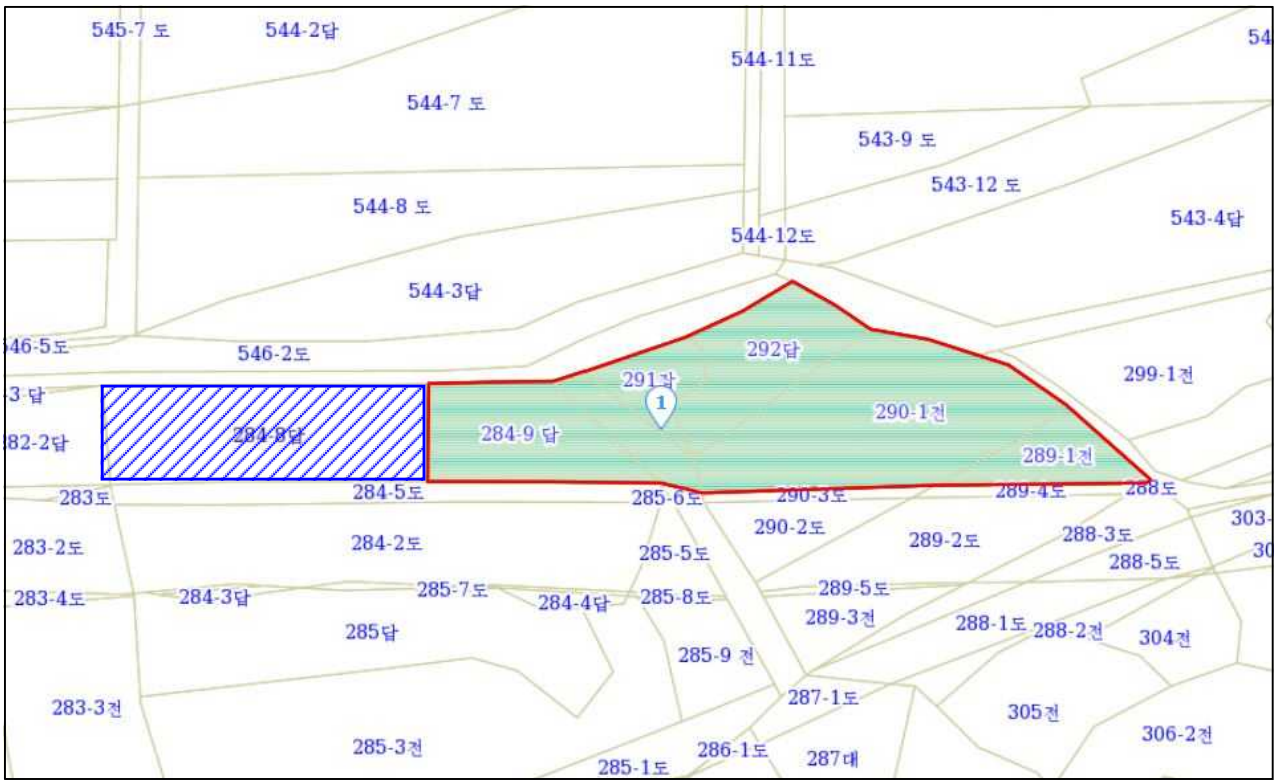

□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현장사진

□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지

아.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원안가결 10명

【보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20-07-14

14.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52건)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52건)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현상변경허가	1	동물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황새 폐사체 소각 - 허가내용 : 황새 소각 - 허가개체 : 1개체 ○ 허가기간 : 2020.8.4.~2020.8.18.	<허가>
	2	동물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황새 건강점검 및 성감별 재검사 - 허가내용 : 황새 혈액채취 - 허가개체 : 14개체 - 허가장소 : 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 사육장 ○ 허가기간 : 2020.10.1. ~ 2020.10.30.	<허가>
	3	동물	천연기념물 제496호 비단벌레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비단벌레 증식·복원 연구 - 허가내용 : 비단벌레 사육 - 허가개체 : 3개체 - 허가장소 : 천연기념물곤충연구소 사육실 ○ 허가기간 : 2020.8.4.~2020.9.30.	<허가>
	4	동물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	○ 신 청 인 : ***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영구장애 개체 전시목적 사육 - 허가내용 : 황조롱이 사육 - 허가개체 : 1개체 - 허가장소 : 화조원(제주시 애월읍) ○ 허가기간 : 2020.8.4.~2025.8.3.	<허가>
	5	동물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 등 2종	○ 신 청 인 :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전시용 박제 제작 - 허가내용 : 참매, 새매 박제제작 - 허가개체 : 5개체(참매 4, 새매 1) - 허가장소 :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상시전시실 ○ 허가기간 : 2020.8.4. ~ 2020.9.30.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6	동물	천연기념물 제496호 비단벌레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비단벌레 증식·복원 연구 - 허가내용 : 비단벌레 사육 - 허가개체 : 1개체 - 허가장소 : 천연기념물곤충연구소 사육실 - 허가조건 : 증식개체 발생시 문화재청 협의 후 방사 ○ 허가기간 : 2020.8.18.~2021.8.17.	<조건부 허가>
	7	동물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원앙 폐사체 매장 - 허가내용 : 원앙 매장 - 허가개체 : 1개체 ○ 허가기간 : 2020.8.18.~2020.9.1.	<허가>
	8	동물	천연기념물 제201-3호 혹고니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혹고니 폐사체 소각 - 허가내용 : 혹고니 소각 - 허가개체 : 1개체 ○ 허가기간 : 2020.8.19.~2020.9.1.	<허가>
	9	동물	천연기념물 제324-6호 소쩍새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소쩍새 폐사체 매장 - 허가내용 : 소쩍새 매장 - 허가개체 : 1개체 ○ 허가기간 : 2020.8.19. ~ 2020.9.1.	<허가>
	10	동물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전시 교육 목적 사육 - 허가내용 : 수리부엉이 사육 - 허가개체 : 1개체 - 허가장소 : 알파카월드(강원도 홍천군) ○ 허가기간 : 2020.8.19. ~ 2025.8.17.	<허가>
	11	동물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	○ 신 청 인 : ***(*** ***** *** ***) ○ 신청사항 - 사 업 명 : 매사냥 전승활동 및 수련 - 신청내용 : 참매 포획, 사육 ○ 불허사유 - 참매 보존에 부정적 영향 - 신청인의 공개행사 및 전수교육 권한 없음 - 포획 지역과 전승지역 상이	<불허>
	12	동물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원앙 폐사체 소각 - 허가내용 : 원앙 소각 - 허가개체 : 1개체 ○ 허가기간 : 2020.8.19. ~ 2020.9.2.	<허가>
	13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 청 인 :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부잔교 및 연결도교 설치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318-2번지 전면 공유수면(문화재구역)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 사업내용 ・부잔교 1개소(L=50.0m, B=3.0m), 연결잔교 8개소(L=6.0m, B=2.0m) ・연결도교 1개소(L=22m, B=1.4m) ○ 허가조건 - 부잔교는 어촌·어항법상 기본시설로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레저용 선박 계류장)로 사용은 금지함. - 겨울철새 도래기간(11월~익년3월)을 피해서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람. ○ 허가기간 : 2020.8.1.~2021.7.31.	
	14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 청 인 :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대저생태공원 다목적잔디광장 조성사업(2차)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5번지 일원(허용기준 1구역) - 사업내용 : 사업면적 15,408㎡, 우수로(파형강관(6m), 측구수로(275m)), 잔디식재(15,408㎡), 나무식재(관목) ○ 허가조건 - 사업지역 일대는 낙동강에 서식하는 오리류의 휴식 및 취식지로 교목(느티나무)은 제외하고 관목(조류들의 먹이원이 될수 있는 수목, 적정 식재 수량 등)이 식재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시기 바람. - 인위적인 시설물(등의자)은 배제하며, 겨울철 철새 도래기간(11월 ~ 익년 3월)은 사업을 중지하시기 바람. ○ 허가기간 : 2020.8.1.~2020.10.31.	<조건부 허가>
	15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근린생활시설 신축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728-28번지 외 3필지(1748-6, 69, 88) (허용기준 3구역) - 사업내용 : 부지면적 3,168㎡, 건물면적 11,366.69㎡ (지하층 4,926.04㎡, 6,440.65㎥), 1개동 (지하 2층~지상5층), 높이 22m(경사지붕부분), 18.6m(평지붕부분) ○ 허가조건 : 겨울철새 도래기간(11월~ 익년3월)을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람. ○ 허가기간 : 2020.7.28.~2021.10.31.	<조건부 허가>
	16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 청 인 :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낙동강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내 무인도서(진우도, 신자도, 장자도, 대마등)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낙동강하구 유입 쓰레기 1,100여톤 수거·처리 ·폐어구, 폐목재, 폐스티로폼, 유리병, 플라스틱 등 ○ 허가조건 - 수거작업은 사주(모래섬)별로 순서를 정하여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이벽을 설치하여 1개소씩 실시하시기 바라며, 작업복과 도구 등은 원색을 피하고 주변색(갈대색)을 사용하여 시각적 교란을 최소화하기 바람. ○ 허가기간 : 2020.8.1.~2020.10.31.	
	17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 청 인 :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중사도 둘렛길 환경정비사업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832-1189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중사도 제내·외지 인근 잡초·잡목 제거(L=3,210m) ○ 허가조건 : 환경정비시 소음과 비산먼지 등 인위적인 교란을 최소화하여 구간을 나누어 작업을 수행하시기 바람. ○ 허가기간 : 2020.8.1.~2020.10.31.	<조건부 허가>
	18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 청 인 :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서낙동강 수초정비사업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670-1~명지동 627-18번지 일원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수초제거 및 들어내기 A=50,000㎡ ○ 허가조건 - 수초제거시 소음과 비산먼지 등 인위적인 교란을 최소화하여 구간을 나누어 작업을 수행하시기 바람. - 수초가 과도하게 밀생되지 않아 물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 구간은 작업을 지양하시기 바람. ○ 허가기간 : 2020.8.1.~2020.10.31.	<조건부 허가>
	19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부산 강서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 구공사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607-574, 3201, 3040-6번지(허용기준 2, 4, 5구역) - 사업내용 : 시추조사 3공(굴착 깊이 70m, 굴착 지름 76mm) ○ 허가기간 : 2020.7.28.~2021.10.31.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20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 청 인 :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을숙도 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 조성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51-14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규모 L=144m, B=43m, H=14m(부지6,192㎡, 코트 8면) · 철골조, PVF막구조물 ○ 허가조건 - 겨울철새 도래기간(11월~익년3월)을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람. - PVF막은 철새의 도래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색상(백, 청, 홍, 황 등)을 배제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색으로 선정(관계전문가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허가기간 : 2020.8.11.~2021.10.31.	<조건부 허가>
	21	동물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평화누리길 편의시설 설치 -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515 ~ 석탄리 925 일원 (허용기준 1구역) - 사업내용 : 평화누리길 그늘막 3개소, 유도 표시판 4개소 설치, 최고높이 2.8m ○ 허가기간 : 2020.7.28.~2020.12.31.	<허가>
	22	동물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 신 청 인 :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을 위한 시추조사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1172-33(허용기준 2구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024-3(허용기준 3구역) - 사업내용 : 굴착심도 130~150m, 직경150~350mm ○ 허가기간 : 2020.7.28.~2020.10.31.	<허가>
	23	동물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근린생활시설 신축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59번지 외 6필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7,815.70㎡, 신청면적 2,974.10㎡ · 건축면적 1,005.41㎡, 연면적 993.86㎡ · 1동 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높이 7m ○ 허가조건 - 사업대상지 인근지역은 저어새가 휴식지(7~9월)로 이용하는 곳으로 소음, 진동이 요구되는 공사는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중지하시기 바람. - 주차장 및 건축물을 충분히 차폐할수 있도록 수목식재 계획(침엽수류 식재)을 마련하여 관할 문화재부서의 승인을 받고 추진하시기 바람. ○ 허가기간 : 2020.8.18.~2022.9.30.	
	24	동물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 신 청 인 :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을 위한 시추조사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하리 88번지(허용기준 2구역) - 사업내용 : 굴착심도 130~150m, 직경150~350mm ○ 허가기간 : 2020.8.18.~2020.10.31.	<허가>
	25	동물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단독주택 및 사무소 신축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897번지외 4필지(허용기준 3, 4구역) - 사업내용 ・대지면적 8,372㎡, 신청면적(건축부지 3,923㎡, 진입로 부지 1,039㎡) ・건축면적 536.85㎡, 연면적 741.75㎡ ・단독주택 5동 2층(1동 120.35㎡), 높이 7.5m, 목구조 ・사무소 1동 1층(140.00㎡), 높이 5.8m, 경량철골조 ○ 허가조건 : 수목식재(소나무류) 및 소단폭 수정 등 보완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관할 문화재부서의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람. ○ 허가기간 : 2020.8.18.~2022.6.30.	<조건부 허가>
	26	동물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호안확장 및 파제제 설치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758-2 전면해역(허용기준 1구역) - 사업내용 ・호안확장 : 매립 2,900㎡, 200m(L)×12~16m(B)×9~14.5m(H)), 사석, 계단식 ・파제제 설치 : 규모 1,710㎡ (90m(L)×19m(B)×19m(H)), 철근콘크리트, 셀블록식 ○ 허가조건 - 호안매립시 수중환경 보호를 위해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시기 바람. -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부유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유물질 농도 증가시 일시적인 공사중단, 공사시간 조절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 허가기간 : 2020.8.1.~2020.12.31.	<조건부 허가>
	27	동물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근린생활시설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478-1, 479번지(허용기준 1구역)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서식지	- 사업내용 ・대지면적 3,062㎡, 건축면적 529.84㎡(1동 199.91㎡, 2동 329.93㎡), 연면적 1,059.68㎡(1동 399.82㎡, 2동 659.86㎡) ・2동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높이 9.95m(계단탑 포함 11.6m) ○ 허가조건 - 공사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토사유출 및 오폐수 등에 대한 상세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관할 문화재부서의 승인을 받고 추진하시기 바람. - 강우기에는 공사를 중지하시기 바람. ○ 허가기간 : 2020.8.1.~2022.8.31.	
	28	동물	천연기념물 제101호 진도 고니류 도래지	○ 신 청 인 :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동식물관련시설(우사) 신축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나리 290, 291번지(허용기준 2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3,587.0㎡, 건축면적(연면적) 1,176.00㎡(840㎡(우사), 336㎡(퇴비사)), 1동 1층, 높이 6.5m ○ 허가조건 - 가축분뇨배출 처리시설(우사, 퇴비사) 등 설치계획(아래 포함)을 관할 문화재부서의 승인을 받고 추진하시기 바람. ・고액분리기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가축분뇨, 액비 등에 의한 오염 방지대책 마련 ・퇴비화시설은 강우시 오폐수가 유출 되지 않도록 지붕 설치 ○ 허가기간 : 2020.7.28.~2021.6.30.	<조건부 허가>
	29	동물	천연기념물 제74호 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 신 청 인 :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백천 명품마을 배전전주 설치공사 - 사업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 13-1, 480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전주공사 12본 설치(H=14m), AITC케이블 376m신설, 기존 배전전주 9본 철거 ○ 허가조건 : 우천 시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공사를 중지하시기 바람. ○ 허가기간 : 2020.8.18.~2020.11.30.	<조건부 허가>
	30	동물	천연기념물 제229호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포매 소하천 정비사업 - 사업위치 : 강원 양양군 전포매리 548일원 78필지 (허용기준 1, 2구역) - 사업내용 ・소하천 정비(L=1,635m(문화재구역 외 585m 포함) ・배수공, 구조물공, 교량공(RC 라멘교 2개소, 합성형라멘교 1개소) ○ 허가조건 - 보완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영향 저감방안을 이행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분기별(연 2회) 사업 공정 현황을 우리 청에 보고하시기 바람. ○ 허가기간 : 2020.8.18.~2020.9.30.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31	식물	천연기념물 제184호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숲	○ 신청인 : ******* ***** *** ** **(***) ○ 허가사항 - 사업명 : 고창 선운사 일주문 주변 불교용품점 신축 - 사업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24-1외 2필지(1구역, 문화재외곽경계로부터 58m 내외) - 사업내용 · 대지면적 1,279㎡, 건축(연)면적 101.7㎡ · 최고높이 7.52m(지상1층 한식목구조) 등 ○ 허가기간 : 2020.7.29.~2021.12.31.	<허가>
	32	식물	천연기념물 제478호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시료채취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선군 북하면 단전리 291 (문화재구역) - 허가내용 : 종자 30립 채집 ○ 허가기간 : 2020.7.29.~ 2020.12.31.	<허가>
	33	식물	천연기념물 제486호 장성 백양사 고불매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시료채취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선군 북하면 약수리 26 (문화재구역) - 허가내용 : 삽수10개(3~5㎝), 종자 40립 채집 ○ 허가기간 : 2020.7.29.~ 2021.8.31.	<허가>
	34	식물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사업명 : 2020년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비가림하우스)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4224(1구역, 문화재외곽경계로부터 2m 내외) -사업내용 · 대지면적 4,181㎡, 하우스면적 3,120㎡ · 최고높이 4.7m, 물탱크면적 44㎡(지하 깊이 3m) ○ 허가기간 : 2020.8.7.~2020.12.31.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35	지질	천연기념물 제543호「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영월 무릉리 1058번지 외 1필지 농지개량 - 사업위치 :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무릉리 1058-1번지 외 1필지(2구역,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40m 이격) - 사업내용 : 농지 개량에 따른 성토(면적 : 1,478㎡ / 성토 높이 : 1.7m) ○ 허가기간 : 2020.7.27.~2021.7.26.	<허가>
	36	지질	천연기념물 제411호「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 신청인 : **** ○ 허사사항 - 사 업 명 : 덕명항내 준설 - 사업위치 :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313-10 인근 (투기장 375-1, 375-2, 374-3)/ 문화재 구역 및 2구역 - 사업내용 : 덕명항내 토사 및 자갈 준설(약 최저저조위로부터 1.8m, 원지반으로부터 1m) ○ 허가조건 - 해상 준설 작업 시, 반드시 전문가(고생물학) 입회하에 준설작업 실시 - 전문가 입회 작업 시, 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준설토 내 매장문화재(화석) 포함여부 확인 (확인 후 준설토 외부 반출) - 일련의 작업 내용 기록화(디지털 기록 포함) ○ 허가기간 : 2020.7.1. ~ 2020.8.31.	<조건부 허가>
	37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허가사항 -사업명 : 단독주택 신축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748-7(2구역,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1m 내외) - 사업내용 · 대지면적 884㎡, 건축(연)면적 165.05㎡/125.32㎡ · 최고높이 5.0m(지상1층, 평지붕) 등 ○ 허가기간 : 2020.7.29.~2021.7.28.	<허가>
	38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독도경비대 조수시길 퇴수배관 설치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55(독도경비대)(문화재구역)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 사업내용 : 배관설치 · 방향 : 조수기실 → 천장굴 · 배관 : PE(∅100㎜) L=32m, Tanmk Truck Hose 등 ○ 허가기간 : 2020.8.8. ~ 2020.10.31.	
	39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인제 오세암 진입로 석축정비 -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75 번지 외 1필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진입로 석축 및 주변 정비공사 · 기존 불량 2단석축(L=44.7m) 및 계단(L=8m) 해체 · 진입로 자연석 석축쌓기(L=45.2m) ··2단석축 하단 L=19m, H0.18~2.3m / 상단 L=19.5m, H0.2~2.0m ··계단우측면 L=5.7m, H0.18~2.4m / 문수동 배면 L=1.0m, H2.1~2.8m · 자연석 계단설치 W1.5m*L=7.5m*H3.78m, W0.3*W0.18~21단 · 맨홀설치(900*900)1개소, 이중벽관 매설(Φ800) L=12m 등 ○ 허가기간 : 2020.8.19. ~ 2021.12.31.	<허가>
	40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인제 백담사 석축 및 기단보수 -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690번지 외 1필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가. 석축보수공사(우범당~산신각 석축 및 주변정비) · 철거공사 : 기존창고 1개동(W3.07*L2.93*H1.63~2.22), 콘크리트 배수로 21본, 맨홀 2개소, 우범당 배면 위험목 7주 제거 · 기존 석축 해체 후 자연석 석축쌓기(L=130.2m, H1.08~2.0m), 자연석 배수로설치(L=73m, W0.3*H0.5m) · 산신각 전면 화강석 계단 해체 및 재설치(W1.5*L1.8*H1.08m, W0.3*H0.18-6단) · 맨홀(600*600, 900*900) 6개소 설치, 이중벽관부설 L=66m, 산마루측구 설치(플륨관 #400)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L=96m, 토공사 : 마사토다짐 267㎡ 등 나. 전각기단보수 : 5개동(바닥면적 1,411.10㎡) · 무설전, 적선당, 헌다실, 무금선원, 각일당 - 이완된 화강석(기단석, 상단) 해체보수, 기존 화강석(판석) 부분적으로 해체보수 ○허가기간 : 2020.8.19.~2021.12.31.	
	41	명승	명승 제108호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VR 강릉 관광 아이들라이더 운영 - 사업위치 :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297-3번지(허용기준: 개별심의구역) - 사업내용 : 아이글라이드 VR부스 1개소 (1년간 운영) ○ 허가기간 : 2020.8.1.~2021.7.31. ○ 허가조건 : 1년 운영한 후 모니터링 결과제출	<조건부 허가>
	42	명승	명승 제16호 예천 회룡포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친환경전기스쿠트사업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950번지(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탐방기구대여점 운영 (스쿠터10대) ○ 허가조건 : 운영결과 제출, 경관 어울리도록 유지, 모래사장 진입금지, 안전조치 (사전교육, 보험가입, 속도제한 등) ○ 허가기간 : 2020.8.1.~2022.7.31.(2년간)	<조건부 허가>
	43	명승	명승 제13호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차량 통제시설물 설치 - 사업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52-14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차량차단기 설치 1개소(폭4.5m) ○ 허가조건 : 도보통행 지장 없어야하며,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 허가기간 : 2020.8.7.~2020.9.30.	<조건부 허가>
	44	명승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 신 청 인 :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동홍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267-7번지(1구역, 문화재외곽경계로부터 90m 이격)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1동(면적181.5㎡, 1층) ○ 허가기간 : 2020.8.11.~2021.8.31.	
	45	명승	명승 제50호 영월 청령포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 사업위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526번지(1구역, 문화재외곽경계로부터 170m 이격) - 사업내용 : 가설건축물 1개(면적 18㎡) ○ 허가기간 : 2020.8.11.~2021.8.31.	<허가>
	46	명승	명승 제9호 진도의 바닷길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고군면 회동항 어업기반 정비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1212-2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기존 방파제 경사면에 접안시설물 부착 75.3m ○ 허가기간 : 2020.9.1.~2021.8.31.	<허가>
	47	명승	명승 제72호 지리산 한신계곡 일원	○ 신 청 인 : *******(*) ○ 신청사항 - 사 업 명 :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설치 -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강천리 산100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강관주 설치 1개소(높이 26m), 관로매설 3,100m 등 ○ 불허사유 : 명승경관 및 보존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불허>
	48	명승	명승 제19호 예천 선몽대	○ 신 청 인 : **** ○ 신청사항 - 사 업 명 : 선몽대 초화류 식재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75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맥문동 식재 2만본(면적 3,083㎡) ○ 불허사유 : 명승경관 및 보존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불허>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허가사항변경허가	49	동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문화재구역, 1~5구역) - 사업내용 <문화재구역> 전체 85,403㎡ (하천시설 10,786㎡, 교량 32,700㎡, 공원및녹지 41,917㎡) * 교량 459㎡(증) <허용기준 1구역> 전체 1,527,502㎡ (하천시설 136,786㎡, 교량 11,789㎡(13개소), 공원및녹지 1,338,629㎡, 도로 38,520㎡, 오수중계펌프장 920㎡, 공공청사 858㎡) *교량 371㎡(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변경) 고시(제2020-11호)에 따른 변경 ·1구역 편입(도로 8,867㎡, 오수중계펌프장 659㎡, 공원녹지 208,589㎡, 공공청사 858㎡,(증)) ·2구역 편입(농업시설 463㎡(감)) <허용기준 2~5구역> 토지이용계획 부분적 변경 *3호 변전소(2구역) (당초)3,000㎡ (변경)3,500㎡(증500㎡) ○ 허가조건 - 실시설계 완료 후 사전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진척에 따라 문화재청에 세부 실시계획도면 첨부하여 중간 및 완료보고 시행 ○ 허가기간 - (당초) : 2015.3.6.~2020.12.31. - (변경) : 2015.3.6.~2023.12.31.	<허가사항 변경 허가>
	50	식물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 상림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성토 및 초화류 식재 -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대덕리 233-1번지 외 27필지(문화재구역과 인접) - 사업내용 : 성토 30cm, 초화류 1,547,000본*, 이동식 포토존 5개소 * 코로나19예방에 따른 행사 연기로 2020.8월~10월 가을 초화류 60만본 추가 식재 ○ 허가조건 - 제출된 사업계획서('19.8.6.)대로 시행하되, 엑스포 행사 종료('21.9.10.)에 따른 원상복구 후 구체적인 종합정비계획서를 2021.6.30.까지 제출 ○ 허가기간 - (당초) 2020.4.21.~2020.10.31. - (변경) 2020.4.21.~2021.10.31.	<조건부 허가사항 변경허가>

<table>
<tr><th>구분</th><th>연번</th><th>유형</th><th>대상문화재</th><th>주 요 내 용</th><th>비 고</th></tr>
<tr><td></td><td>51</td><td>지질</td><td>천연기념물
제513호
「제주
수월봉화산쇄
설층」</td><td>○ 신청인 :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수월봉과 차귀도 현무암과 화산쇄설암 시료 채취
- 사업위치 : 제주 수월봉화산쇄설층 일대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수월봉과 차귀도 현무암과 화산쇄설암 시료 채취
· 지구연령 측정 시료 5개
· 대자율이방성분석 시료 100개
- 허가조건
· 제주시 공무원 입회 하에 채취할 것
· 시료 채취 후 해당 지역 사진 제출할 것 (미관상 저해 또는 훼손 여부 판단)
· 연구 완료시 연구결과를 공유할 것
○ 허가기간
- (당초) : 2020.5.1 ~ 2020.07.31
- (변경) : 2020.5.1 ~ 2020.09.30.</td><td><허가
사항
변경
허가></td></tr>
<tr><td></td><td>52</td><td>지질</td><td>천연기념물
제178호
「삼척
대이리동굴지대」</td><td>○ 신청인 : ****(********)
○ 허사사항
- 사 업 명 : 노후된 아스콘 덧씌우기
- 사업위치 :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189외 6필지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아스콘 덧씌우기 등 주차장 보수 공사
<table><tr><th>공종별</th><th>규 격</th><th>단위</th><th>수량</th><th>비 고</th></tr><tr><td>아스콘덧씌우기</td><td>5cm</td><td>㎡</td><td>2,755</td><td></td></tr><tr><td>주차면도색</td><td>2.3 × 5.0</td><td>면</td><td>70</td><td></td></tr><tr><td>안전지대</td><td>황색</td><td>㎡</td><td>58.0</td><td></td></tr><tr><td rowspan="2">진행방향표시</td><td>직진</td><td>개</td><td>7</td><td></td></tr><tr><td>좌회전</td><td>개</td><td>2</td><td></td></tr><tr><td>일시정지선</td><td>백색</td><td>m</td><td>3.5</td><td></td></tr><tr><td>황색실선</td><td>B=15CM</td><td>m</td><td>197</td><td></td></tr></table>- 허가조건
· 아스콘 자재의 색이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색상으로 처리할 것
○ 현상변경허가
- 변경사유 : 장마철 강한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어 공사에 어려움이 따르고, 관람객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로 공사기간 연장
- 허가기간
· (당초) : 2020.7.8. ~ 2020.8.31.
· (변경) : 2020.09.01.~ 2020.10.31</td><td><허가
사항
변경
허가></td></tr>
</table>

나.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접수 10명